

공직자 행동강령 사례집 2013

공직자 행동강령 사례집 2013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 행동강령 사례집 2013



국민권익보호,
신뢰받는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국민권익위원회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국민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듣겠습니다



이 사례집은 ..

행동강령 시행 첫해인 2003년부터 2012년까지의 상담, 신고사건 처리, 운영 및 이행실태 조사·점검 과정에서 나타난 실제 사례를 수집하여 제작한 것입니다.

세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장에는 행동강령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괄적 소개와 그 동안의 운영 실적을 수록하였습니다.

제2장에는 16개 행위기준별 행동강령의 위반사례를 자주 발생하는 순서대로 소개 하면서, 사례에 따라서는 하나 이상의 조문에 위반된 경우가 있으나, 이해를 돕기 위해 주요 행위기준과 관련된 조문에 수록하였습니다.

제3장에는 행동강령 총칙 및 이행체계 등에 대하여 각급 기관에서 상담 및 질문한 내용을 Q&A 형식으로 정리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사례집 관련사항

신고자, 피신고자 및 관련 기관 등의 사항은 실명 등이 드러나지 않도록 익명을 사용하였으며 이해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사례 일부를 재구성한 부분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CONTENTS

제1장 행동강령 개관 10

제2장 행동강령 위반사례 18

- 1.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20
 - 사례1 | 할인받은 항공료를 사적 용도로 사용 20
 - 사례2 | 학위복 대여비 부당 사용 21
 - 사례3 | 국·공립 학교장의 경조사비 부당 사용 22
 - 사례4 | 공직유관단체 임직원들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 22
 - 사례5 | 출장비 및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 23
 - 사례6 | 근무지내 출장여비 관행적 부당 수령 23
 - 사례7 | 근무지내 출장여비 상시등록을 통한 부당 수령 24
 - 사례8 | 차량유지비 부당 지급 24
 - 사례9 | 차량등록사업소 직원들의 출장비 부정 수령 25
 - 사례10 | 관용차량을 이용한 출장여비 과다 수령 26
 - 사례11 | 출장비를 부정 수령하여 식사로 사용 27
 - 사례12 | 연가보상비 부당 지급 27
 - 사례13 | 직원회식에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28
 - 사례14 | 업무추진비로 사적 임의단체 회비 지출 28
 - 사례15 | 업무추진비로 사적 전별금 지출 29
 - 사례16 | 업무추진비 불법 카드할인 후 회식비 등에 사용 29
 - 사례17 |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30
 - 사례18 | 외부 강의 시 강의료 및 출장비 중복 수령 31
 - 사례19 | 공공 문화예술기관의 무료초대권 임의 배포 32
 - 사례20 | 인구주택총조사 출장여비 횡령 33
 - 사례21 | 외유성 해외출장을 통한 예산 목적 외 사용 34
 - 사례22 | 직업군인들의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34

- 사례23 | 공무원들의 시간외근무수당 부당 수령 35
- 사례24 | 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36
- 사례25 | 공직유관단체 직원의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36
- 사례26 | 부서장의 재료비 등 예산 목적 외 사용 37
- 사례27 | 자치법규 추록 인쇄 부수 과대계상에 따른 예산낭비 37
- 사례28 | 소모성 전산용품 구매서류 조작을 통한 횡령 등 38
- 공공기관의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위반 주요 유형 39
-
- 2. 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40
- 공무원 행동강령 금품 수수 금지의 이해 41
- • 유형A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수수 42
 - 사례29 | 본부 체육행사에 소속 기관장들로부터 찬조금 수수 42
 - 사례30 | 공무원인 아내를 통한 인사 대가 금품 수수 42
 - 사례31 | 간부공무원의 산하재단 법인카드 사적 사용 43
 - 사례32 | 급식납품업체로부터 백화점상품권 수수 44
 - 사례33 | 택배로 배달된 명절 선물 수수 45
 - 사례34 | 학교장의 교직원에 대한 상습적 금품 및 향응 요구 45
 - 사례35 | 초등학교 교사의 '스승의 날' 촌지 수수 46
 - 사례36 | 중학교 교사의 촌지 수수 46
 - 사례37 | 자택에 택배로 배달된 촌지 수수 47
 - 사례38 | 골프장 간부로부터 포도주 선물세트를 수수 48
 - 사례39 | 신입직원의 백화점 상품권 수수 48
 - 사례40 | 공사 직원의 과다한 기념품 수수 49
 - 사례41 | 직원체육대회 경품협찬 요구 49
 - 사례42 | 재외공관장의 골프장 무료회원권 수수 50
 - 사례43 | 산하단체로부터의 관행적 표창 및 금품 수수 51
 - 사례44 | 교장·교감의 친목회로부터 상품권 수수 52
 - 사례45 | 근무지의 출장 중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수수 52
 - 사례46 | 공직유관단체 직원의 무료 진료서비스 수수 53
 - 사례47 | 체육교사의 금품 수수 54
 - 사례48 | 경찰관의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수수 55
 - 사례49 | 동료교사 및 직무관련자로부터의 금품 수수 55

— 사례50 | 직무관련자로부터의 축하선물 부당 수수 56

— 사례51 | 물품 구매를 이용한 직무관련자로부터의 금품 수수 56

— • 유형B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 수수 57

— 사례52 | 출판기념행사 명목 향응 수수 57

— 사례53 | 현장 감독소장으로부터 식사비·주류비 수수 58

— 사례54 | 불법광고물 철거업체로부터의 향응 등 수수 58

— • 유형C 여행접대, 골프접대 등 수수 59

— 사례55 | 산하기관으로부터 해외연수비 수수 59

— 사례56 | 수학여행전문 업체로부터 무료여행 수수 60

— 사례57 | 직무관련업자로부터 해외 골프 및 향응접대 수수 60

— 사례58 | 설계용역 업체로부터 해외여행 및 향응 수수 61

— 사례59 | 산하 단체에 골프부킹 청탁 등 61

— 사례60 | 제약업체 관계자로부터 골프접대 수수 62

— 사례61 | 공무원의 직무관련자로부터 해외여행 수수 63

— 사례62 | 공단 직원의 골프접대 수수 64

— 사례63 | 금고은행·법인카드사의 공무원 해외여비 지원 64

— 3. 금품 등을 주는 행위의 금지 65

— 사례64 | 공직유관단체 원장의 금품등 제공금지 위반 65

— 사례65 | 지자체장의 공무원 대상 금품등 제공금지 위반 66

— 4. 경조사의 통지 및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67

— 사례66 | 직무관련단체에 경조사 대리통지 행위 등 68

— 사례67 | 업무지원시스템을 통한 직무관련자 대상 경조사 통지 68

— 사례68 | 직무관련단체에 명함을 동봉한 청첩장 통지 69

— 사례69 | 업체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통한 경조사 통지 69

— 사례70 | 홈페이지를 통한 직무관련자 대상 경조사 통지 70

— 사례71 | 직무관련 경조사 통지 및 경조금품 초과 수수 71

— 5.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72

— 사례72 | 개인차량에 방역 작업용 휘발유 주유 72

— 사례73 | 단체장 부인이 공용차량 사용 73

— 사례74 | 공사감리용 차량 출·퇴근에 사용 73

— 사례75 | 지자체 공무원의 기관SMS를 이용한 경조사 통지 74

— 사례76 | 업무와 무관한 데이터 통화 사적 사용·수익 74

— 사례77 | 지자체 공무원의 업무상 구입 물품 불법 처리 75

— 사례78 | 교장의 학습용 교구 물품 사적 사용 76

— 사례79 | 용도 폐기 관청 관사를 주거 사용 및 임대 활용 76

— 사례80 | 사적으로 대학 출강 중 관용차량 부당 사용 77

— 사례81 | 구청 사용 토지 일부에 농작물 사적 경작 78

— 사례82 | 관사에 업무용 컴퓨터 설치·사용 78

— 사례83 | 공용물인 TV, 세탁기 등을 자택에서 사용 79

— 사례84 | 교육원장의 관용차 사적 사용 80

— 사례85 | 군 부대장의 공용물 사적 사용·수익 80

— 6. 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 81

— 사례86 | 고액 강의로 수수 후 미신고 81

— 사례87 | 공직유관단체 직원의 외부 강의 신고 위반 82

— 사례88 | 사립대학교에서 요청한 외부강의 신고 누락 82

— 사례89 | 대가를 받는 외부강의 미신고 83

— 공무원 외부강의 대가기준의 이해 84

— 7.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85

— 사례90 | 용역사업 수행 중 이해관계 직무회피 불이행 86

— 사례91 | 시험관리 공직자의 이해관계 직무회피 불이행 86

— 사례92 | 사촌이 신청한 건축허가 심의 87

— 사례93 | 파견공무원의 자신의 처 특혜 채용 88

— 8. 특혜의 배제 89

— 사례94 | 처·동생 운영업체 수의계약 특혜 제공 89

— 사례95 | 공무원 자녀의 공공근로사업 참여 특혜 제공 90

— 사례96 | 국립대학교 교수들의 신규교수 특혜 채용 90

— 사례97 | 지인을 부당하게 학교직원으로 채용 91

— 사례98 | 상사의 고교동창에게 수의계약 특혜 제공 91

사례99 | 교장이 자기 자녀를 직원으로 특채 92
 사례100 | 승진대상자들에 대한 시험 준비 특혜 제공 92
 사례101 | 손실보상 안내공문에 특정 세무사 소개 93
 사례102 | 공무원의 재단법인에 대한 특혜 제공 94
 사례103 | 특정연구원 위탁 교육에 고액수강료 특혜 제공 95

— 9. 이권 개입 등의 금지 96
 사례104 |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경력산정 특혜 제공 96
 사례105 | 연구용역과제 사업비 임의 관리 및 간접비 부당 집행 . . . 97
 사례106 | 지자체 재산관리담당자의 이권 개입 98
 사례107 | 특정업체 소개를 통한 하도급 강제 99
 사례108 | 학교장의 물품납품 관련 이권 개입 100
 사례109 | 학교장의 부당한 해외연수 대상자 모집 행위 100
 사례110 | 처 소유의 가게에서 시가보다 비싸게 기념품 구입 101

— 10. 알선·청탁 등의 금지 102
 사례111 | 부당한 인쇄물 수주 청탁 102
 사례112 | 납품업자의 부당한 이익을 위한 소개 행위 103
 사례113 | 공직유관단체 본부장의 계약담당 직원 알선·청탁 103
 사례114 | 심사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에게 특정 작품 거론 104
 사례115 | 지자체 부군수의 담당공무원 알선·청탁 105

— 11. 인사 청탁 등의 금지 106
 사례116 | 승진인사 청탁 106
 사례117 | 대학교수 임용 인사 청탁 107

— 12.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108
 사례118 | 법원직원의 직무정보 이용 재산상 투자행위 108
 사례119 |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입 109
 사례120 | 건설분야 공무원의 직무정보를 이용한 토지 매입 110
 사례121 | 직무 수행 중 취득한 부동산 매매 정보 부당 제공 111

— 13.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112
 사례122 | 국립대학교 교수의 소속기관 명칭 사적 사용 112
 사례123 | 기관명을 이용한 부당한 이익제공 113

— 14.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한 처리 114
 사례124 | 시간외수당 부당각출 지시 115
 사례125 |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 지시 116
 사례126 | 특정 업체 물품 구매 지시 117

— 15. 금전의 차용 금지 등 118
 사례127 |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차용 118
 사례128 | 직무관련공무원인 친구로부터 금전 차용 119

— 16.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120
 사례129 | 지방의회위원의 특정직원 채용 청탁 120
 사례130 | 지방의회위원의 부당한 청탁 121

제3장 행동강령 Q & A 122

— 1. 직무관련자 124
 — 2.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 129
 — 3. 선 물 132
 — 4. 향 응 134
 — 5. 공직자 행동강령 적용범위 135
 — 6. 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136
 — 7. 외부강의 회의등 신고 140
 — 8. 경조사·경조금품 관련 제한 142
 — 9. 위반행위의 신고와 확인 143
 — 10. 금지된 금품등의 처리 145
 — 11. 위반 시 처벌 148
 — 12. 기타 150

공직자 행동강령 사례집 2013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행동강령 개관

제 1 장 행동강령 개관

➔ 행동강령의 법적 근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은 제3조(공공기관의 책무)에서 건전한 사회윤리 확립 및 부패방지 노력 책무를, 제7조(공직자의 청렴의무)에서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청렴의무를 명시하고 있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동법 제8조(공직자 행동강령)에서 “공직자가 준수하여야 할 행동강령을 대통령령,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내부규정으로 제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모든 공공기관에 대해 행동강령의 제정·시행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 공직자 행동강령의 연혁

가. 공무원 행동강령

2003. 2. 18. 대통령령으로 행정부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이 제정·공포되어 2003. 5. 19. 시행되었고, 동 대통령령을 기준으로 모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도 2003. 5. 19. 기관별 행동강령을 제정·시행하였다.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 역시 각각의 규칙으로 소속공무원에게 적용되는 행동강령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이후 시행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2005. 12. 9. 공무원 행동강령을 1차 개정하였다. 2008. 2. 29.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2차 개정하였고, 2008. 11. 5. 종교편향 금지를 추가하여 3차 개정을, 2008. 12. 31. 직무관련자 범위와 이해관계 직무 범위의 확대 등을 반영하여 4차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각각의 개정 내용은 모든 행정기관과 공직유관단체들의 기관별 행동강령에 반영되어 운영되고 있다.

공무원 행동강령 행위기준(대통령령 제22471호)		
공정한 직무수행(6개)	부당이익의 수수 금지(7개)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3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급자의 부당지시 처리 •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 특혜의 배제 •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 처리 • 인사 청탁의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권개입의 금지 •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 알선·청탁의 금지 •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제한 • 공용물의 사적사용 제한 • 금품 등을 받는 행위 제한 • 금품 등을 주는 행위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강의 등의 신고 • 금전의 차용 금지 • 경조사 통지 및 금액 제한

나.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2004. 9. 부패방지위원회(현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의해 404개 공직유관단체에서 임직원 행동강령을 자율적으로 제정·시행하여 오다 2005. 7. 부패방지법 제8조를 개정하여 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 시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개정 후 부패방지법 제8조를 근거로 국가청렴위원회(현 국민권익위원회)가 2006. 4. 3. 공직유관단체에 공직자행동강령 제정·시행을 권고하고, 이에 따라 2006. 6. 1. 모든 공직유관단체가 내부규정(사규)으로 각각의 임직원 행동강령을 제정·시행하였으며, 2013. 5월 현재 806개 공직유관단체가 임직원 행동강령을 운영하고 있다.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 행위기준(국가청렴위원회 제2006-45호 의결)

공정한 직무수행(7개)	부당이익의 수수 금지(9개)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3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급자의 부당지시 처리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특혜의 배제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 처리 인사 청탁의 금지 투명한 회계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권개입 등의 금지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알선·청탁 등의 금지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제한 공용재산의 사적사용·수익 금지 금품 등의 수수 제한 배우자 등의 금품 등 수수 제한 금품 등 제공 금지 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부강의 등의 신고 금전의 차용금지 등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2003년부터 시행되어 온 현행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 제22471호)은 일반직 공무원에게 적합하게 되어 있어, 선출직 공무원인 지방의회의원에게 직접 적용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어왔다.

이에 따라 주민의 대표자로서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지방의회의원의 신분적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기존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지방의회의원 부분을 분리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 제22471호)이 2010. 11. 2. 제정·공포되어 2011. 2. 3.부터 시행 중에 있다.

〈지방의회의원 행위기준(대통령령 제22471호)〉

공정한 직무수행(4개)	부당이익의 수수 금지(5개)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6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인사 청탁 등의 금지 직무 관련 위원회 활동의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권 개입 등의 금지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제한 공용물의 사적사용·수익 금지 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의원 간 금품수수 행위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외 활동 제한 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 영리행위의 신고 금전 거래 등 제한 경조사 통지 및 금액 제한 성희롱 금지

➔ 행동강령의 운영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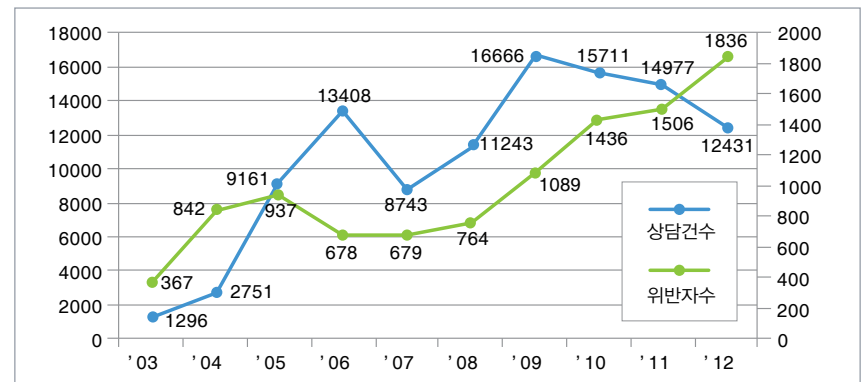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 행동강령의 운영실적

2003년 5월 시행 이후 행동강령은 적용규모가 1,361개 기관, 153만여 명에 이르고 위반자 수도 총 10,134명('12년 12월말 기준)에 달하는 등 명실 공히 공직윤리의 준수를 위한 규범적 행위기준으로 기능하고 있다.

연도별 행동강령 위반자현황 및 상담실적



➔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자 현황

위반유형별 현황

(단위 : 명)

위반유형	합계	'03,5 ~	'04	'05	'06	'07	'08	'09	'10	'11	'12
합계	10,134	367	842	937	678	679	764	1,089	1,436	1,506	1,836
금품등 수수	5,216	259	624	737	428	392	283	381	760	651	701
예산의 목적 외 사용	3,138	32	75	84	133	121	346	464	424	552	907
알선, 청탁, 이권개입	441	21	53	31	20	37	17	70	63	80	49
공용물 사적사용	403	29	45	28	21	16	21	60	49	79	55
외부강의 등 신고의무 위반	329	5	4	9	6	36	72	65	50	52	30
금전차용의 금지 위반	116	-	1	3	15	7	6	30	21	15	18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	92	-	1	3	4	39	3	8	9	17	8
경조사 통지, 경조 금품	84	7	11	15	7	6	5	2	9	4	18
기타	315	14	28	27	44	25	11	9	51	56	50

처분유형별 현황

(단위 : 명)

처분유형	합계	'03,5 ~	'04	'05	'06	'07	'08	'09	'10	'11	'12	
합계	10,134	367	842	937	678	679	764	1,089	1,436	1,506	1,836	
징계처분	소계	4,533	198	429	468	409	387	304	377	735	604	622
	파면	734	27	63	52	65	74	56	92	130	97	78
	해임	519	18	42	53	54	61	63	48	74	61	45
	강등	29	-	-	-	-	-	-	-	4	8	17
	정직	946	52	81	123	73	77	55	79	150	123	133
	감봉	1,054	45	114	98	108	78	60	67	179	152	153
	견책	1,251	56	129	142	109	97	70	91	198	163	196
	주의·경고	4,620	126	254	383	181	173	425	582	625	771	1,100
기타(훈계등)	926	43	159	86	88	114	34	128	72	108	94	
진행중	55	-	-	-	-	5	1	2	4	23	20	

공직자 행동강령 사례집 2013





공직자 행동강령 사례집 2013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행동강령 위반사례

제 2 장 행동강령 위반사례

1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공무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사례 1 할인받은 항공료를 사적 용도로 사용

- 모 고등학교 교사 2명은 '해외 자매결연학교 방문 교육계획'에 따라 학생 22명과 함께 3박4일간 중국의 상하이에 소재한 자매결연 학교를 방문하면서,
- 단체여행 시 15명당 1명씩 인솔자로 하여 항공료를 면제해주는 여행사의 할인 규정을 적용받아 항공료 70여만 원을 할인받았음에도, 인솔교사인 자신들의 항공료를 학교예산에서 지출한 것으로 처리하여 출장비를 지급받은 후 이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함.

열차 운임 · 항공료 등을 할인받는 경우, 할인금액을 차감하고 출장여비를 신청 및 수령하여야 하며 위와 같이 기관의 예산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임.

사례 2 학위복 대여비 부당 사용

- 모 대학교 행정실 직원들은 학교가 관리하는 학위복을 졸업생들에게 세탁비, 관리비 등 실비만 받고 대여해 주는 학위복 대여 사업을 시행하면서,
- 수익금에 대한 별도의 예산편입 조치도 하지 않고, 수입 · 지출 대장 없이 임의로 관리하여 행정실 직원들의 수당 명목으로 총 2,489만 원을 나눠 갖거나, 회식비 내지 야유회비 등으로 사용함.

학위복 대여 사업으로 발생된 수입은 예산으로 편입하여 사용하거나,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수입대체경비'로 편성 · 집행하여야 함에도, 예산 편입조치 없이 사업과 무관한 행정실 직원들이 수당 명목으로 나눠 갖거나, 사적으로 유용한 행위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위반임과 동시에 제10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위반임.



사례 3

국·공립 학교장의 경조사비 부당 사용

- ○시교육청 소속 국·공립 교장 14명은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여 소속 직원이 아닌 타 교육청 직원, 타 학교의 교장·교감 등 개인의 경조사비 및 지인의 회갑연 축하비 등으로 총 802회 3천6백여만 원을 지출함.



국·공립 교장들이 업무추진비를 소속직원이 아닌 개인적 친분관계에 있는 자의 경조사비로 사용하거나, 경조사가 아닌 사향입에도 경조사비 명목으로 지출한 행위는 예산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으로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위반임.

사례 4

공직유관단체 임직원들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

- 모 공직유관단체 A팀장은 동료 팀장급 이상 간부들과의 단합 모임 명목으로 골프장에서 휴일 골프 회동을 하고, 골프장 사용대금 91만 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함.
- B팀장은 甲룸살롱 등 기관 소재지에 위치한 고급 유흥주점에서 지인들과의 유흥비로 120만 원과 177만 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함.
- C차장은 업무상 알게 된 상대회사 간부진들과 공휴일 저녁에 乙룸살롱에서의 유흥비로 220만 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함.



상기 공직유관단체 임직원들이 법인카드를 룸살롱·골프장 등 사용이 금지된 장소에서 사용하거나, 휴일에 사적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평일이라도 자정을 넘긴 심야 시각에 접대나 유흥 목적으로 금 1억 3,660만 원을 사용한 행위는 예산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으로 공직자 행동강령상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위반임.

사례 5

출장비 및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

- 기초자치단체 모 시설관리공단 A직원은 총무과에서 출장비 및 초과근무수당 서류 작성 업무를 담당하면서,
- 자신이 직접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점을 이용하여 실제로는 출장이나 초과근무를 하지 않으면서 수기대장에 허위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매월 약 60만 원 상당의 출장비 및 초과근무수당을 부정하게 수령함.



위 임직원은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여 소속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으로 공직자 행동강령상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규정 위반임.

사례 6

근무지내 출장여비 관행적 부당 수령

- 기초자치단체 A과장은 4시간 이상의 근무지내 출장을 신청한 후 실제로는 65회(일)에 걸쳐 4시간 미만을 출장했음에도, 감액없이 출장여비를 부당하게 수령함.
- 기초자치단체 B과장은 근무지내 출장 중 49회(일)은 관용차량을 이용했음에도 감액되지 아니한 출장여비를 부당하게 수령함.
- 기초자치단체 C과장은 출장 여부와 상관없이 매월 15일 이상을 일률적으로 근무지내 출장한 것처럼 결제한 후, 실제로는 사무실에서 근무했음에도 출장여비를 월정액 형태로 부당하게 수령함.



위 공무원들의 행위는 공무활동을 위한 출장비 예산을 허위로 수령하여 소속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으로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위반임.

사례 7

근무지내 출장여비 상시등록을 통한 부당 수령

- 모 기초자치단체 공무원A는 서무·회계 등 업무담당자로 사실상 출장이 별로 없음에도 1년 365일 중 휴일을 제외하고 250여 일을 일률적으로 10:00~17:00까지 상시 관내 출장한 것처럼 결재를 받아 매월 관내 출장여비 최대액을 부당하게 수령하였고,
- 같은 지자체 공무원B도 출장이 잦은 편은 아니었음에도, 일괄적으로 근무지내 출장을 결재받아 출장비를 허위로 수령하는 등 106명이 약 1천만 원 상당의 관내 출장여비를 부당하게 수령함.



공무원들이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여 소속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으로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위반임.

사례 8

차량유지비 부당 지급

- 모 공직유관단체에서는 '자가운전자 차량유지비 지급지침'을 내부규정으로 제정하여 자기소유 차량을 이용하여 공단업무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자에게 '차량유지비'로 월 20~30만 원씩 지급키로 규정했음에도,
- 이사장과 감사를 제외한 간부직원 79명에게 증빙서류도 누락시키고 실제 이용 여부 등도 확인하지 않는 등 '차량유지비'를 일률적으로 임의 지급하면서, 실제 출장에서는 대부분 업무용 공용차량이나 실무자 차량을 이용함.



공직자들이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여 소속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으로 공직자 행동강령상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에 위반됨.

사례 9

차량등록사업소 직원들의 출장비 부정 수령

- ○○시 차량등록사업소 공무원들은 차량등록 관련 민원 업무를 담당하면서, 업무 특성상 출장을 나갈 수 없는 상황임에도 산하 분소 등 인근지역에 출장한 것으로 허위 신청·결재하거나 동행자 수 부풀리기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소속직원 전원이 출장비 명목으로 각각 10여만 원을 매월 부당하게 수령함.



위 공무원들의 행위는 공무활동을 위한 출장비 예산을 허위로 수령하여 소속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으로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위반임.



사례 10

관용차량을 이용한 출장여비 과다 수령

- ○○도교육청 A국장은 관내 학교의 현안업무 파악과 기관 간의 업무협의를 위해 평소 출장업무가 잦은 편으로서
- 출장 시 기관 소속의 관용차량을 이용하여 출장을 가면서도 출장여비 신청서에는 개인소유 차량으로 출장을 가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32회에 걸쳐 출장비 차액 38만 원을 부당하게 수령함.



공무원이 관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운임 전부와 일비의 1/2을 공제하고 출장여비를 지급토록하고 있음에도, 출장신청서류에 이를 명시하지 않아 개인소유 차량을 이용한 출장으로 지급된 여비를 수령하고도 차액을 반납하지 않은 것은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위반임.

※ 「공무원 여비 규정」(대통령령)

제16조(일비·숙박비·식비의 지급) ③ 일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하되, 관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등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제18조(근무지내 국내출장시의 여비) ①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의 경우에는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2만 원을 지급하고, 4시간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1만 원을 지급한다. 다만,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별표 1에 따른 전용차량 배정자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등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장을 하는 공무원에게는 1만 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사례 11

출장비를 부정 수령하여 식사비로 사용

- 모 광역자치단체 A사무관은 세미나 참석 및 선진지 견학 등의 명목으로 약 2년 여간 총 12회에 걸쳐 출장신청을 하여 출장여비 545만 원을 수령함.
- 그러나, 실제로는 단 한 차례도 출장을 가지 않는 등 출장여비를 부정하게 수령하여 식사비 등 개인용으로 사용함.



공무원은 출장여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함으로써 소속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여서는 아니되므로, 위 공무원의 행위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위반임.

사례 12

연가보상비 부당 지급

- 모 공직유관단체(○○공단) 예산팀 A직원은 소속 직원들의 연가일수 산정 시 공단 직원으로 근무한 경력만을 산정해야하는 「공단보수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기존 공직 경력을 모두 인정하여 과다 산정되어온 사실을 알게 되어 소속 팀장과 상의함.
- 이미 매년 50만 원 상당의 연가보상비를 더 지급받아온 팀장은 '상급기관의 예산 감사에서도 지금까지 문제가 없었다'는 이유로 기존대로 지급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A직원은 해당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존 공직 경력을 모두 인정하여 임직원들의 연가일수를 과다 산정해주어 3백여만 원을 부당하게 지급함.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직원들에게 더 많은 연가보상비를 지급함으로써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행위는 공직자 행동강령상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위반임.

사례 13

직원회식에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 모 대학교 부설 행정실 직원들은 수차례에 걸쳐 학교주변 고급음식점에서 매회 10~30만 원 상당의 회식을 직원들끼리 하고, 마치 프로젝트 구축관련 회의를 외부 전문가 등과 개최하고 참석자에게 저녁식사를 제공한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 위 회식비를 공금으로 집행함.



기관의 사업추진과 관련한 예산을 직원회식 등 사적으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혔으므로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위반임.

사례 14

업무추진비로 사적 임의단체 회비 지출

- 모 중학교 A교장은 관내 동주민센터장, 우체국장, 전화국장, 지역유지 등 10여명과 함께 지역유지 친목단체를 만들어 회원의 경조사에 50만 원, 퇴직시 금 1냥 등을 지급하는 내용의 회칙을 정하고 매월 정기모임을 가져오면서
- 친목단체 월 회비 10만 원을 학교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매월 지출하는 등 2년여 동안 총 270여만 원을 지출하였음.



각급 교육청의 '학교회계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르면 '교직원이 개인자격으로 가입한 단체에 대하여는 학교예산으로 지출할 수 없으며 지출시 환수 조치'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지역유지 친목단체, 교육협의회 등 법적 근거가 없이 설립된 교원친목 단체는 학교장이 아닌 개인자격으로 가입한 단체에 해당되므로 위 임의단체에 대한 업무추진비로의 정기적 회비지출은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위반임.

사례 15

업무추진비로 사적 전별금 지출

- ○○군교육청 A교육장과 초등학교 B교장은 같은 교육청에서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는 교원 중 과거 같이 근무한 적이 있는 초등학교 교장 등 교원 30여 명에게 1인당 10만 원씩 총 300만 원의 전별금을 군교육청 및 학교의 업무추진비에서 지출함.



각급 교육청의 '학교회계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르면 전별금의 예산지출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이 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하는 행위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위반임.

사례 16

업무추진비 불법 카드할인 후 회식비 등에 사용

- 모 광역자치단체 소속의 A소방본부장은 57만 원 상당의 예산을 사적 친분이 있는 지인들의 경조사 및 접대비용으로 사용하였고,
- 업무추진비 카드를 불법 할인(속칭 "카드깡")하여 마련한 현금 52만 원을 소속직원들의 회식비용 등에 사용함.



업무추진비 등 공무원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소속 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한 행위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위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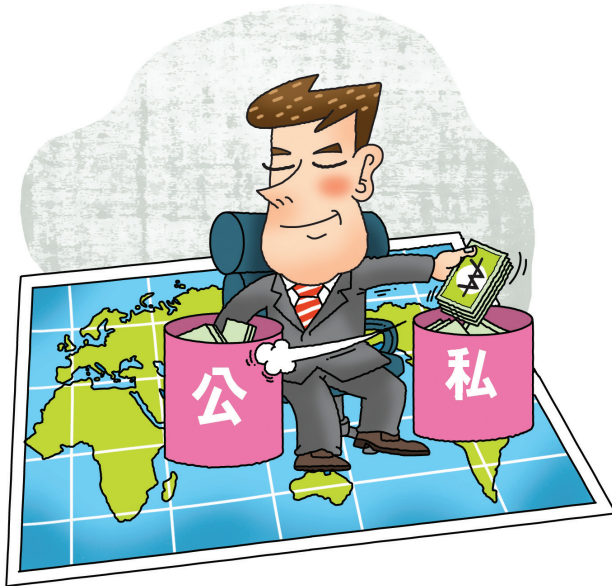
사례 17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 모 공직유관단체 A부장은 해외 근무를 발령받고 해당국 지역센터장으로 근무하면서 업무추진비를 자신과 가족 식사비, 음주비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하고 회계서류에는 바이어 등과 업무협의 과정에서 지출한 것처럼 꾸미도록 부하직원 B와 모의함.
- 부하직원 B과장은 실무담당자로 A부장 가족과의 식사비·음주비 등에 예산을 지출하고, 이 사실을 은닉·은폐할 목적으로 A부장과 공모하여 영수증의 발행일자를 변조함.



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여 소속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한 행위는 공직자 행동강령상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위반임.



사례 18

외부 강의 시 강의료 및 출장비 중복 수령

- ○○교육청 A사무관은 대학 및 공무원교육원 등에서 직무와 관련하여 연간 50여 회에 걸쳐 외부강의를 하고 강의료 1천 3백여만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소속기관으로부터 별도로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출장여비를 지급받음으로써 여비를 중복 수령함.



강의를 요청한 기관에서 지급하는 강의료에는 통상적으로 강의수당뿐만 아니라 여비 등 실비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소속기관으로부터 이와 별도의 출장비를 수령하는 것은 출장비 중복수령으로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위반임.

◆ ◆ ◆ 참고 ◆ ◆ ◆

※ 공무원 복무제도 해설(안전행정부)

- 출장조치가 가능한 출강의 경우에도 강의를 요청한 기관에서 실비를 지급할 경우에는 출장여비를 지급할 수 없음
- 출장명령은 출장여비의 지급근거가 되는 것이나, 출장명령이 있다 하여 반드시 출장여비를 지급하는 것은 아님
- 직무와 관련하여 공무원교육원에 출강하여 강사료를 받은 경우 출장여비 지급 없이 출장으로 처리함
- 민간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출강할 경우 강의가 직무수행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출장조치가 가능하나, 직무수행과 무관한 출강의 경우 연가를 사용해야 함



사례 19

공공 문화예술기관의 무료초대권 임의 배포

- 공공 문화예술기관 A임직원들은 업무추진비 및 수수료 예산 480여만 원으로 1매당 2~9만 원인 공연관람권을 1~2천 원에 편법 구입 후, 2,924매(1억4천392만 원 상당)의 무료초대권을 마련하여 공무원 등에게 업무협의 명목으로 제공하거나 내부직원 등에게 임의 배부하고 사용내역도 부실하게 관리함.
- 공공 문화예술기관 B임직원들도 초대권 배부를 위한 별도 관리규정없이 무료초대권을 발급하여 내부직원에게 1,110매(5천874만 원 상당)를 임의 지급하고, 유관 기관 협조 명목으로 공무원·지방의회의원 등에게 184매(1천101만 원 상당)를 제공함.



정당하게 판매되어야 할 공연관람권을 예산으로 변칙 발급 후, 내부직원에게 임의 지급하여 소속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행위 및 공무원·지방의회의원 등에게 제공한 행위는 각각 공직자 행동강령상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금품등을 주는 행위의 금지 위반임.

※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무료초대권'의 폐해를 인식하고 「국립 및 공공 예술기관 운영관련 개선 지침」을 시달하여 '무료초대권'의 부적정 발급 및 배포 관행 근절을 단계적으로 추진 중임.



사례 20

인구주택총조사 출장여비 횡령

- 모 기초자치단체 통계담당 A공무원은 매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와 관련하여 관내 주민센터 담당자들의 여비를 국비(통계청 예산)로 집행하면서, 마치 3~4일 이상의 출장이 있는 것처럼 출장내역을 작성한 후,
- 실제 출장이 없는데도 여비를 현금으로 허위 청구하거나, 출장한 사실에 있는 경우에는 이들에게 여비를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함.



위 공무원이 국비 사업에 배정된 여비 일부를 횡령하는 등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여 소속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행위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위반임.



사례 21

외유성 해외출장을 통한 예산 목적 외 사용

- 모 기초자치단체 A공무원은 알프스 주변 우수관광도시 방문 명목으로 국외출장업무를 추진하면서 지방의회의원의 국외여비를 지급 기준보다 높게 책정하고, 동반 직원에게도 숙박비·식비는 물론 일비까지 상향 조정하여 총 130여만 원을 과다하게 지급함.



지방의회의원의 국외여비를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지급 기준보다 높게 책정하여 지급한 행위와 동반 직원의 경우 숙박비·식비에 한하여 상급자 동행에 필요한 최소 등급으로 상향 지급할 수 있음에도 일비까지 추가 지급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행위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위반임.

사례 22

직업군인들의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 ○○부대 소속 A준위 등 직업군인 11명은 사전결재된 시간외근무명령대로 근무하지 않고 다른 동료 부사관이나 당직행정병을 통해 근무 종료 시각을 시스템에 대리입력하는 방식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함.



위 군인들의 행위는 공무활동을 위한 시간외근무수당 예산을 허위 등록하여 수령하고 소속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으로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위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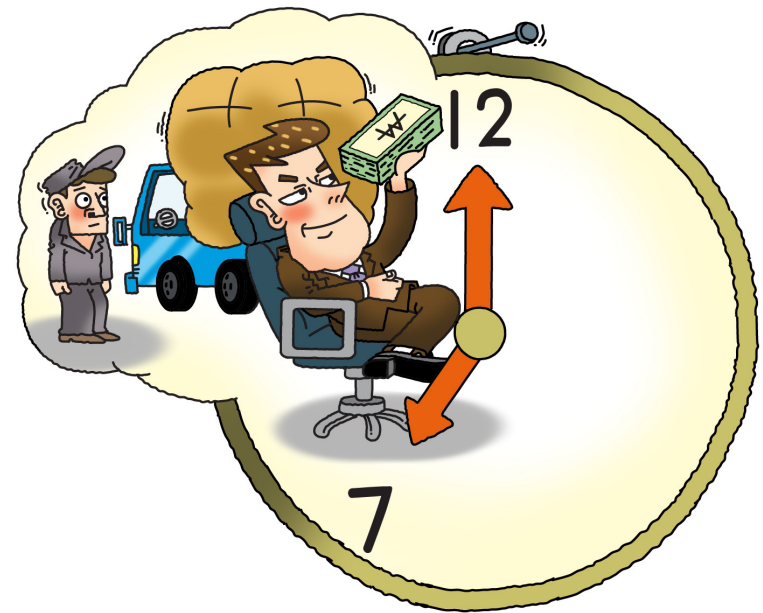
사례 23

공무원들의 시간외근무수당 부당 수령

- 모 광역자치단체 ○○사업소 과적단속 공무원 19명은 시간외근무를 실제로는 하지 않았음에도, 개인별 인사시스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한 후 순번을 정해 야간 및 휴일근무시간을 대리 등록하여 최대 월지급액을 받는 방식으로 시간외근무수당 640여만 원을 부당하게 수령함.



위 공무원들의 행위는 공무활동을 위한 시간외근무수당 예산을 허위 등록하여 수령하고 소속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으로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위반임.



사례 24 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 모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운전원 A는 초과근무 사전신청을 해놓고 퇴근하여 음주 등 개인용무를 본 후 사무실로 복귀하고도 마치 공무상 야간 운행한 것처럼 운행일지를 허위 기재하는 방식으로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함.
- 모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B와 C는 휴일에 사적 등산, 야유회 참석을 했음에도 마치 초과근무를 한 것처럼 허위 입력하여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함.

위 공무원들의 행위는 공무활동을 위한 초과근무수당 예산을 허위 등록하여 수령하고 소속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으로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위반임.

사례 25 공직유관단체 직원의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 모 공직유관단체에서 비서업무를 하는 A는 업무시간 후 수영장 시설 이용, 모친 병문안 등 개인용무를 본 후 사무실로 복귀하여 퇴근 시간을 등록하고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함.

위 공직자의 행위는 공무활동을 위한 초과근무수당 예산을 허위 등록하여 수령하고 소속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으로 공직자 행동강령상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위반임.

※ 초과근무수당 등을 부당하게 수령한 경우 부정수령액 전액 환수 및 부당수령액의 2배의 금액을 가산징수

사례 26 부서장의 재료비 등 예산 목적 외 사용

- 모 기초자치단체 부서장들은 재료비(제품 또는 생산에 소비되는 물적 재화에 관한 비용, 광물 및 기타 특수한 물건 구입, 동·식물·식물종자 구입 및 사료구입 등) 예산으로 지역특산품(주류·비누세트)을 구입하여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등에게 선물로 제공하고, 지급내역 없이 집행하는 등 예산 8천9백여만 원을 목적 외로 부당 사용함.

위 공무원들이 재료비 예산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행위와 자신에게 금품 등을 받는 것이 금지된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행위는 각각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제14조의2(금품등을 주는 행위의 금지) 위반임.

사례 27 자치법규 추록 인쇄 부수 과대계상에 따른 예산 낭비

- 모 광역자치단체 공무원들은 자치법규 제·개정사항을 반영한 추록을 8회에 걸친 인쇄 과정에서 특정업체와 수의계약 후 당초 계약한 인쇄 면수보다 실제 납품한 인쇄 면수가 훨씬 적음에도 이를 부풀려 6회에 걸쳐 약 7천5백만 원을 과다하게 지급함.
- 모 기초자치단체 A주무관은 7회에 걸쳐, B주무관은 10회에 걸쳐 자치법규 추록을 인쇄하면서, 인쇄 매수를 계상하지 아니하여 인쇄업체에 조달청 인쇄기준요금보다 각각 2백여만 원 및 140여만 원을 과다하게 지급함.

위 공무원들이 검수하지 아니하고 계약일반원칙을 위배하여 소속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행위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위반임.

사례 28

소모성 전산용품 구매서류 조작을 통한 횡령 등

- 모 기초자치단체 회계업무 담당자 A 등 54명의 공무원들은 토너·복사용지 등 전산소모품 납품계약 과정에서 甲서비스와 80% 이상을 계약하는 등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면서,
- 甲서비스에 전화를 걸어 특정 전산소모품을 구매한 것처럼 견적서 및 지출결의서를 허위로 작성·결제한 후 카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업체로부터 현금으로 받는 방식(일명 카드깡)으로 약 7천8백만 원 상당의 회계서류를 허위로 작성·행사함.
- 이들은 이렇게 조성한 현금으로 직원회식비 등 유흥비로 소비하는 등 예산을 횡령함.



위 공무원들이 지출결의서 등을 허위로 작성·결제 후 소위 카드깡 방식으로 예산을 유용하여 소속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행위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위반임.



공공기관의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위반 주요 유형

- 법인카드 사용기준을 위반한 집행
 - 의무 제한업종(소)에서 사용
 - 노래방, 골프장, 유흥주점 등
 - 심야·휴일 등 직무관련 장소, 시간 외의 사용
 - 골프화, 의류, 가방 등 개인물품 구입
 - 소속 상근직원 외의 자 명절선물 제공 : 상급·감독기관, 지역유지 등
-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부적정 집행
 - 부적정 현금 지급
 - 현업(장)종사자가 아닌 자에 대한 격려금품
 - 전출자, 국외출장·훈련자, 기타 외부인사 등 격려금품
 - 축하 선물 부적정 제공
 - 내부직원 승진 및 전출 축하선물
 - 상급기관 및 관할구역 외의 자에 대한 승진, 전·출입 시 축하선물
 - 공공기관이 아닌 개인사무실 개소, 출판기념회 등 축하선물
 - 경조금품 부적정 집행
 - 기관별 경조금품 지급기준 한도액 초과 집행
 - 부모 회갑연·고회연, 자녀돌, 형제자매의 사망·입원 등에 집행
 - 출향 인사, 전출·퇴직직원 등에게 집행
 - 기타 사기업직원 등 개인적 친분에 따른 집행
- 교육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부적정 집행
 - 교육장·교장·교감협의회, 동문회 등 사적단체 정기적 회비 집행
 - 소속 상근직원 외의 인근학교장, 퇴직자 등에 대한 경조금품 집행
 - 현금 집행 범위 외의 격려금, 장도금, 전별금, 위로금 등 집행
- 기타 부적정 집행
 - 출장비, 시간외근무수당 등 허위 청구 또는 부당 수령
 - 기타 업무 외적인 예산 집행 등

2 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제14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2.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5.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등
 6. 그 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제공되는 금품등
- ② 공무원은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품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소액의 선물
 3. 직원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등
 4.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 격려, 포상 등 사기를 높일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등
- ③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였던 자나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부터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 각 호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④ 공무원은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등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무원 행동강령상 금품 수수 금지의 이해

- 개념
 - 공무원(甲)→직무관련자(乙, 민간인·공무원) 사이에 우월한 지위에 있는 甲이 그렇지 못한 乙로부터 금품등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제14조)
 - ※ 경조금품 수수의 경우 별도로 규정(제17조)

■ 세부기준

제공자 (乙)	금품 (금전, 부동산, 선물, 향응)	경조금품
직무관련자	민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등을 받을 수 없음. - 〈선물〉을 받는 것은 금지 - 〈음식물·편의〉를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3만 원 범위내 허용 * 기타 예외사항은 행동강령 제14조제1항 참고 	5만 원이내 授受 (통지 불가)
	공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은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품등을 받을 수 없음. - 〈선물〉은 3만 원 범위내 주고받는 것을 허용 - 〈음식물·편의〉를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3만 원 범위내 허용 * 기타 예외사항은 행동강령 제14조제2항, 제14조의2 참고 	
비직무관련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동강령의 적용대상이 아님. 	5만 원이내 授受 (통지 가능)

-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상급자→하급자) 3만 원 범위내 선물을 받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공무원간 간소한 선물 제공이 사회상규에 부합한다고 보기 때문이고, 상급자가 하급자에게(상급자→하급자) 선물을 주는 것은 가능
-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공무원과의 관계에 있어 직무관련자에 해당되므로 공무원에게는 선물 제공 불가

- ※ 경조사는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소속직원)에 대한 통지는 가능)에게 통지할 수 없고,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는 5만 원을 초과한 경조금품을 주고받는 행위는 금지
- 예외 : 친족 및 친목단체 제공 금품, 기관장이 예산으로 집행하는 경조금품 등
- 기관장이 기관예산으로 업무직접관련자 및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집행하는 경조금품은 예산집행지침에 의한 금액기준으로 집행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수수

사례 29 본부 체육행사에 소속 기관장들로부터 찬조금 수수

- 모 공직유관단체 총무과장 A와 직원 B는 본부 임직원만을 위한 체육행사를 추진 하면서, 소속 기관장들로부터 행사 찬조비 명목으로 금 10~20만 원 상당의 현금 과 양주·오징어·홍어 등 물품을 포함하여 총 18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음.



소속기관의 인사, 예산 배정 등에 대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어 직무관련성이 있는 본부 임직원들이 자신들의 행사를 위하여 소속기관장들로부터 찬조금 명목의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할 수 없도록 규정한 공직자 행동강령상 금품 수수 금지 위반임.

사례 30 공무원인 아내를 통한 인사 대가 금품 수수

- 지방공무원 A는 같이 근무하던 동료 공무원 B를 통해 당시 인사계장이던 B의 남편 C에게 인사 청탁을 하였고, 이에 C는 A를 타 부서로 진출토록 인사 발령을 조치해줌.
- A는 이들의 도움에 대한 감사 표시를 해야겠다고 생각하던 중, 설 명절에 즈음하여 B를 청사 로비로 불러내 고마움을 표시하며 제과류 포장 속에 상품권 50만 원 (10만 원권 5매)을 넣어 건넸고, B는 금품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수수함.



공무원임에도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B와 C는 모두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위반이고, 공무원인 A가 인사 청탁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인사담당자의 배우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행위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의2(금품등을 주는 행위의 금지) 위반임.

사례 31

간부공무원의 산하재단 법인카드 사적 사용

- 모 중앙행정기관 간부공무원 A부이사관은 25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산하단체인 甲재단법인으로부터 법인카드를 수시로 제공받아 수백만 원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고, 골프 접대도 받음.
- 한편, A부이사관은 그 단체의 당연직이사로 이사회 회의에 5회 참석하여 합계 1백만 원의 회의수당을 지급받으면서도 별도의 출장비를 청구하여 이중으로 지급 받음.



위 공무원이 직무관련자로부터 법인카드를 제공받아 사용하거나 골프접대를 받은 행위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위반이고, 회의수당과 출장비를 이중으로 수령한 행위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위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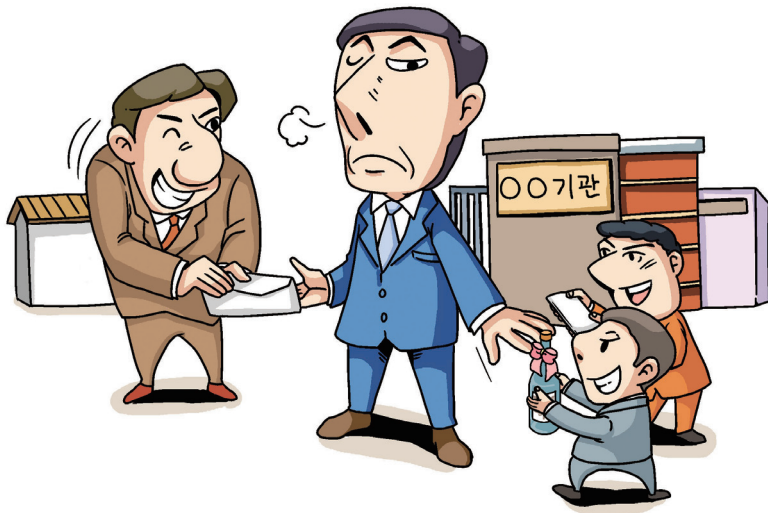
사례 32

급식납품업체로부터 백화점상품권 수수

- 모 대학교 복지과장A는 교내 식당을 운영 중인 급식업체 대표B가 찾아와 명절 선물명목으로 백화점 상품권 10만 원권 5매(50만 원 상당)를 제공하자,
- 이를 전달받아 같은 과 직원 2명에게 각각 1장씩 나누어 준 다음 나머지 3장은 본인이 사용함.



위 급식업체 대표는 복지과장의 직무관련자에 해당하므로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수수를 금지한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위반임.



사례 33

택배로 배달된 명절 선물 수수

- 모 공직유관단체 경영기획팀장 A는 회식을 마치고 밤늦게 귀가하자, 그를 맞이한 딸이 '누가 옥돔세트를 명절선물로 택배로 보내와 상할까봐 냉동실에 넣어두었다'고 말하여 다음날 확인해보니 자신이 근무하는 부서에서 발주한 용역계약을 수행하고 있는 甲연구원 B원장이 보낸 선물임을 알게 됨.
- A팀장은 처음에는 돌려주려 하였으나, B원장이 용역계약과는 상관없이 평소 팀장에 대한 고마움의 표현으로 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또한 포장을 이미 뜯어 냉동실에 넣어둔 상태라 돌려주기 어렵다 판단하여 위 옥돔세트를 수수함.



본인의 부서에서 발주한 용역계약을 수행하고 있는 업체로부터 30만 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수수한 행위는 공직자 행동강령상 금품 수수 금지 위반임.

사례 34

학교장의 교직원에 대한 상습적 금품 및 향응 요구

- 모 초등학교 A교장은 평소 교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어느 교사 가족이 양주 1병을 가지고 찾아와서 인사하고 가 기분이 좋다', '주택 값이 올라 돈을 많이 벌었으니 남편에게 말해 술 한 잔 사라'는 등 교사들에게 심적 부담을 주는 말을 자주 하자,
- 이에 부담을 느낀 이 학교 B교사와 C교사는 10만 원 상당의 양주와 20만 원 상당의 갈비세트를 각각 A교장의 자택으로 택배를 통하여 제공하자, A교장은 해당 교사들에게 교내 인터폰을 통하여 '잘 받았다'며 감사를 표시함.



소속 교사는 학교장의 직무관련공무원으로서 학교장이 이 같은 직무관련 공무원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위반임.

사례 35 초등학교 교사의 '스승의 날' 촌지 수수

- 스승의 날을 맞아 ○○초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아이 학부모가 담임교사 A를 찾아가 케이크 1개와 함께 백화점 상품권 10만 원권 2매(20만 원 상당)를 감사의 뜻이라며 학교 교실에서 전달하자,
- A교사는 형식적으로 거절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다가 이를 수수하였음.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학부모는 담임 교사의 직무관련자이고 이 같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선물 등 금품수수가 제한되므로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케이크 속에 담긴 상품권을 수수하는 행위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위반임.

사례 36 중학교 교사의 촌지 수수

- 모 공립중학교 학생회장의 학부모B는 어머니회에 자동 참여한 후 회비부담 문제로 갈등이 생기고 담임교사A가 보호자상담도 없이 자신의 자녀에게 별점 등 불이익을 준다고 느껴 약 20만 원 상당의 유명브랜드 지갑을 교실에서 제공하였고,
- A교사는 학부모B가 학생지도에 대해 감사의 표시를 한다고 생각하여 해당 선물을 받아 사용함.

위 담임교사가 직무관련자인 학부모로부터 지갑 선물을 수수한 행위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위반임.

사례 37 자택에 택배로 배달된 촌지 수수


- 모 초등학교 A교사는 학부모 임원들이 설 명절 전에 택배로 자택에 배달된 떡 세트 선물과 50만 원 백화점 상품권을 받자,
- 문제가 커지는 것을 우려하여 학교에는 신고하지 않고 시기적으로도 방학이므로 개학 후 학부모들의 마음을 상하지 않도록 조용히 반환하겠다고 마음먹고 이를 수수하여 보관함.

위 담임교사가 직무관련자인 학부모로부터 수수한 상품권 선물을 즉시 반환하지 않고 수수 및 보관한 행위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위반임.




사례 38 **골프장 간부로부터 포도주 선물세트를 수수**

- 모 기초자치단체 골프장 인허가 담당 공무원 A는 관내 골프장에 근무 중인 직원 B로부터 추석명절 선물로 와인세트 7개를 가져왔다는 전화 연락을 받자,
- 위 선물을 인적이 한적한 지하 주차장으로 가져오게 하고 이를 수수함.

 골프장에 대한 감독권한을 가진 소관부서의 공무원이 골프장 임직원으로부터 선물을 수수한 행위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위반임.


사례 39 **신입직원의 백화점 상품권 수수**

- 도서관 사서직 신입직원 A는 관내 도서관 전산업무 유지 보수업체 관계자로부터 ‘회사에서 명절선물이 나왔는데 전해드리고 싶다’는 전화를 받고, 잠시 망설이다가 소속 팀장 B에게 유선으로 보고하여 팀장으로부터 선물을 수수해도 좋다는 승낙을 받자,
- 업체 관계자를 사무실로 오게 하여 백화점 10만 원권 상품권 3장을 전달받아, 1장은 자신이 갖고 나머지 2장은 B팀장과 전산업무 담당직원에게 각각 나누어 줌.

 공직자가 소관업무와 관련된 위와 같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선물(상품권)을 수수하는 행위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위반임.


사례 40 **공사 직원의 과도한 기념품 수수**

- 모 정부투자기관 현장감독소장 A차장은 건설공사 착공과 관련한 기념품 명목으로 시공업체에 장당 4천 원짜리 일반 기념품인 수건 수백 장을 제작토록 요구하고,
- 이와 별도로 공사 감독관청 공무원 및 소속기관 간부직원을 위한 특별 기념품으로 개당 6만원 상당의 골프용 고급 가죽벨트 120개(합계 720만 원)를 추가 요구하여 전달 받음.

 특정인을 대상으로 제작된 고가의 선물은 행동강령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불특정 다수인에 배포하는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으로 보기 어려워 위와 같은 행위는 공직자 행동강령상 금품 수수 금지 위반임.

사례 41 **직원체육대회 경품협찬 요구**

- 모 광역자치단체 총무과장 및 담당직원은 자신들의 체육대회를 개최하면서 직원들에게 나누어 줄 경품이 필요하자, 동 단체와 금고계약을 맺고 있거나 각종 기금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관내 금융기관에게 각종 필요 물품을 나누어 협찬토록 요구하여
- 관내 3개 금융기관으로부터 디지털TV, 디지털카메라, 전자레인지, 김치냉장고, 백화점 상품권 등 모두 2천1백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직원들의 체육행사에 경품으로 나누어 줌.

 지방자치단체가 금고계약 등을 맺고 있는 직무관련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위반임.

사례 42 재외공관장의 골프장 무료회원권 수수

- ○○국 주재 재외공관장 A는 주재국에 진출한 한국기업 대표로부터 동 기업이 운영하는 골프장 1년 무료회원권(멤버십 카드)을 제공받으면서, 기업 측으로부터는 프로모션 차원의 제공이라는 설명을 들었기에 반환이 부자연스러웠고, 본인이 골프를 하지도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수수함.

공직자는 행동강령상 직무관련자로부터 선물 등 금지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되므로, 자신이 수수한 금품의 이용 가능 여부에 관계없이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행위 자체로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위반임.



사례 43 산하단체로부터의 관행적 표창 및 금품 수수

- 甲협회와 乙협회에서는 매년 관행적으로 관내 업체 수주물량 확보 및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표창을 수여해 옴.
- 이 과정에서 甲협회에서는 광역자치단체 지부별로 금 열쇠고리(3돈, 시가 60만 원 상당)를 부상으로 제공하였고,
- 乙협회에서는 광역자치단체 지부별로 고급 LCD TV를 부상으로 제공하여 공무원들이 거부감없이 수수함.

공무원이 직무관련단체로부터 공로에 대한 표창을 받는 행위는 별론으로 하고 통상의 관례의 범위를 벗어난 부상을 추가로 받는 행위는 직무상 공정성 및 청렴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위반임.



사례 44 교장·교감의 친목회로부터 상품권 수수

- 모 초등학교 교장A와 교감B는 교사들 모임인 친목회로부터 2번의 명절에 걸쳐 각 10만 원짜리 상품권을 제공받자,
- 감사 표시를 거절하면 오히려 회원들이 부담될 수 있다는 생각에 이를 수수한 후 곧바로 친목회 발전기금 30만 원을 기부함.

위 교장·교감이 발전기금을 기부한 사실을 불문하고, 직무관련공무원인 교사들로부터 상품권을 수수한 행위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위반임.

사례 45 근무지의 출장 중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수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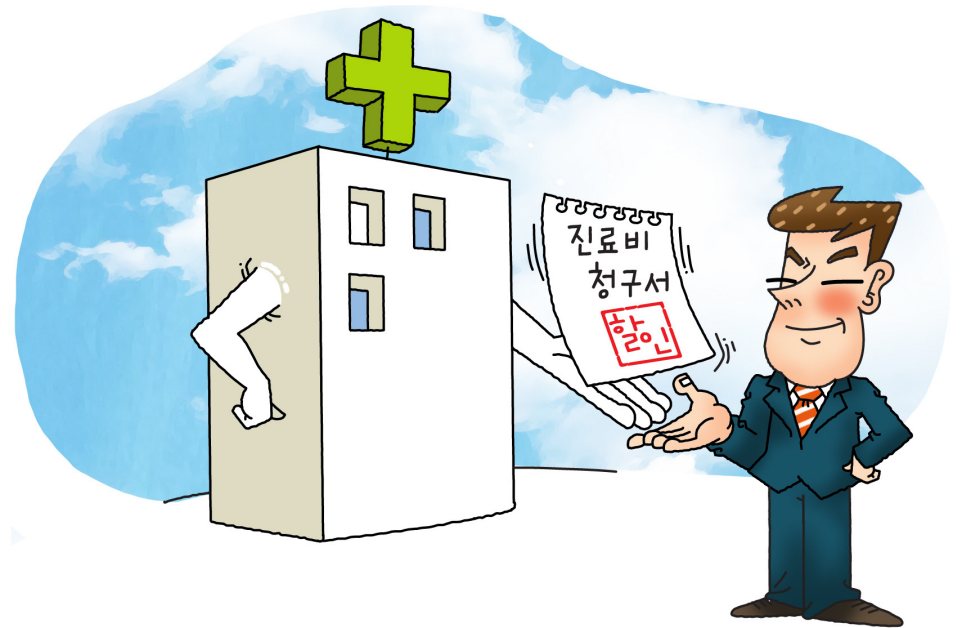
- 모 기초자치단체 공무원A는 추석절 시기에 근무지의 출장을 실시하던 중, 직무관련자인 설비업체 대표B를 출장지 근처로 불러 직원 식사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수수함.

위 공무원의 행위는 직무관련자로부터 선물 등 금지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위반임.

사례 46 공직유관단체 직원의 무료 진료서비스 수수

- 모 공직유관단체 A부장은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관내 병원에서 10여 차례에 걸쳐 개인진료를 받고, 해당 병원으로부터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부분에 대하여 주요고객 '할인' 명목으로 약 20여만 원을 부담하지 않는 혜택을 받음.

위 공직자의 행위는 결과적으로 할인받은 금액 상당을 부당하게 수수한 행위와 다름 아닌 것으로 공직자 행동강령상 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위반임.



사례 47 체육교사의 금품 수수

- 모 고등학교 체육교사A는 해당 학교 운동부 특기자로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이 무릎 부상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학부모B에게 2천만 원을 빌려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 학부모B가 이에 대해 곤란한 기색을 보이자 이번에는 1천만 원을 빌려 달라고 재차 요구하여 결국 500만 원의 금품을 받아냄.

위 교사의 행위는 직무관련자인 학부모로부터 금전 차용(직무관련자와의 금전 차용은 금지됨)을 빙자하여 능동적으로 금품을 요구하고 이를 수수한 것으로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위반임.



사례 48 경찰관의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수수

- 모 경찰서 A형사팀장은 아내의 가출신고를 한 민원인B에게 수사경비가 많이 소요 되고 형사들도 애로가 많다는 취지의 언행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듯한 의사표시를 하였고,
- 이에 민원인B가 아내를 빨리 찾아 달라고 부탁하면서 현금 1백만 원씩 봉투 2개 (총 2백만 원)를 제공하자 별다른 거부 없이 수수한 후 일부는 자신이 갖고 일부는 부하직원들의 식사비로 사용함.

위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인 수사업무와 관련하여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수수한 금품의 사용 내역을 불문하고 공무원 행동강령 제 14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위반임.

사례 49 동료교사 및 직무관련자로부터의 금품 수수

- 모 공립고 부장교사A는 동료교사B가 도(道)기능위원회로부터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비로 70만 원을 지원받자,
- B교사에게 교장 상납 등 명목으로 10만 원을 요구하여 수수하고, 동 대회에서 입상한 학생C로부터는 포상금 중 50만 원을 요구하여 수수함.

위 부장교사가 동료교사로부터 제공받은 금품은 별론으로 하고, 직무관련자인 자신의 제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위반임.

사례 50

직무관련자로부터의 축하선물 부당 수수

- 모 중앙행정기관 간부 2명은 직무관련자인 산하기관 임직원 등으로부터 자신들의 승진 축하 명목으로 14개 총합 167만 원 상당의 선물을 받은 후 즉시 반환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내부직원에게 경매처분 후 그 수입금을 소속기관 불우직원과 그 유가족 등에게 전달함.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 직원이 금지 금품 등을 수수 후 신고할 경우 제공 받은 내역 및 처리경위 등을 기록·관리하고, 제공자에게는 관련사실을 통보하여야 함. 이러한 절차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은 결과적으로 금지 금품을 수수한 것과 다르지 않아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위반에 해당됨.

사례 51

물품 구매를 이용한 직무관련자로부터의 금품 수수

- 국립○○연구원 A연구사는 현미경세트 구매계약이 갑납품업체와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계약부서로부터 통보받은 후, 갑업체직원을 통해 계약내용과 상관없는 카메라(150만 원 상당)를 부속물품명에 추가하여 제공해달라고 요구함.
- 이후 A연구사는 카메라를 수수한 사실을 담당과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연구원 재산목록에도 등재하지 않음.



위 공무원의 행위는 직무관련자로부터 선물 등 금지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위반임.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 수수

사례 52

출판기념행사 명목 향응 수수

- 지역식품업체 대표들로 구성된 甲식품협의회 B회장은 관할 식품 업무를 담당하는 A간부공무원이 최근 저서를 출판한 사실을 알고 해당 식품협의회 주관으로 출판 기념행사 개최 계획을 세우고 이를 A에게 제의하자,
- A간부공무원은 출판기념행사 날짜를 정하여 소속 직원을 통해 초청 대상자들에게 연락하게 하고, 행사 당일 수십 명의 직원들과 함께 주변 자격으로 참석하여 甲식품협의회로부터 상당한 수준의 식사 접대를 받고, 2차로 유희주점에서 수백만 원 상당의 향응 접대를 받음.



식품업체를 지도·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공무원이 위와 같이 식품업체 관계자로부터 향응 접대를 받은 행위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위반임.



사례 53

현장 감독소장으로부터 식사비·주류비 수수

- 모 기초자치단체 건설과 A과장 등 공무원 일행은 퇴근 후 인근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던 중, 우연히 해당과에서 감독하고 있는 공사현장 소장B를 만나 합석할 것을 권유함.
- 이에 B현장소장은 A건설과장 일행과 합석하여 식사와 음주를 한 후 그 비용 일체를 지불함.



공사를 감독하는 담당 공무원은 위와 같은 공사감독 현장소장으로부터 식사 등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위반임.

사례 54

불법광고물 철거업체로부터의 향응 등 수수

- 모 기초자치단체 A공무원은 광고물팀에서 고정광고물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직무와 관련하여 불법광고물 철거업체인 甲사 직원으로부터 동료 공무원B와 함께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의 술 접대 향응을 제공받음.
- 이에 더해 A공무원은 관할 구역인 ○○마트앞 노상에서 1백여만 원 상당의 패키지 일본여행권 및 현금 30만 원을 추가로 제공받음.



직무관련자인 불법광고물 철거업체로부터 수차례의 술접대 향응 및 해외 여행, 현금 등을 제공받은 행위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위반임.



여행접대, 골프접대 등 수수

사례 55

산하기관으로부터 해외연수비 수수

- 모 중앙행정기관 A팀장은 선진 해외연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부족하자, 지도·감독 관계에 있는 산하기관 담당팀장에게 전화를 걸어 '선진 우수사례 연구를 위한 유렵시찰이 필요하니 함께 공무원여행을 갈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요구한 후,
- A팀장 본인 외 담당자 1명은 산하기관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해외시찰을 다녀옴.



공무원이 산하기관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해외연수를 실시하는 것은 직무관련자로부터의 향응수수 행위로 간주되어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위반임.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7장] 공무원국외여행
2-다. 공무원국외여행의 심사 및 허가기준

- 여행자의 적합성
 - 여행목적과 취지 등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개인과의 여행은 금지됨
- 여행경비의 적정성
 - 감독기관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이 동행하는 공무원국외여행 시 산하기관에 비용을 부담시키거나 접대받는 행위 금지

사례 56 수학여행전문 업체로부터 무료여행 수수

- 수학여행전문 버스운송업체 대표A는 초·중·고등학생의 향후 수학여행지로 금강산이 부상할 것으로 예측하여 학교 간부공무원들에게 금강산 연수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공문을 대량으로 발송하면서 2박3일의 무료여행을 제안하자,
- 이에 학교 간부공무원 200여명이 신청하여 2박3일 일정의 금강산 여행을 다녀오거나 본인이 참가하지 못할 경우 본인의 처가 대신 금강산 무료여행에 참가토록 함.

각급 학교와 버스운송 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거나 체결하고자 하는 업체는 당해 학교의 직무관련자로서 해당 공무원과 그 가족은 모두 무료여행 접대를 받을 수 없으므로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위반임.

사례 58 설계용역 업체로부터 해외여행 및 향응 수수

- 모 광역자치단체 간부공무원A는 관내 녹지조성공사 설계 용역을 발주하면서 해당 설계용역 업체 대표를 사무실로 불러 '공사설계 시 해외 선진사례도 알아 볼 필요가 있다'면서 은근히 해외여행을 요구하여,
- 위 간부공무원과 부하직원 1명은 업체관계자 2명을 대동하여 연가를 내고 4박 6일 일정으로 동남아 해외 관광여행을 가서 업체로부터 여행비용 일체 및 유흥주점에서 성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음.

공무원이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을 접대 받는 것은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위반임.



사례 57 직무관련업자로부터 해외 골프 및 향응접대 수수

- 모 광역자치단체 민원실장은 자신의 친목회 회원과 해외여행을 추진하면서 과거 민원이 자주 발생하여 알게 된 환경유해물질 배출업소 대표에게 위 해외여행에 동행할 것을 제안하자,
- 위 업체 대표는 이를 수락하고 해외여행에 동행하여 민원실장은 물론 함께 동행했던 친목회 회원에게까지 골프와 향응을 접대함.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업체 대표로부터 해외여행에 동반하여 골프 및 향응을 접대 받는 것은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위반임.

사례 59 산하 단체에 골프부킹 청탁 등

- 모 중앙행정기관 A국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6명은 지도·감독관계에 있는 산하 공직유관단체 운영 갑골프장에 수시로 가명으로 부킹을 요구하여,
- 40여 차례 위 골프장에서 지인들과 함께 골프를 치고 골프비용을 회원가로 할인받는 등 편의를 제공받음.

공직자가 산하 직무관련단체에 부킹을 요구하는 행위는 물론 골프비를 회원가로 할인받는 행위도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위반임.

사례 60

계약업체 관계자로부터 골프접대 수수

- 계약회사 이사와 직원이 甲국립병원에 자기 회사의 의약품을 납품할 목적으로 이 병원 소속 전문의 2명에게 주말에 골프를 제안하자,
- 위 전문의 2명은 수도권 소재 乙골프장에서 위 업체 관계자 2명을 만나 함께 골프를 치고 업체 관계자가 골프비용을 지불함.



공직자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직무관련자로부터 골프 및 향응을 접대 받는 것은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위반임.



사례 61

공무원의 직무관련자로부터 해외여행 수수

- 모 광역자치단체 계약직 A주무관은 글로벌 패션브랜드 육성업무를 추진하면서, 관련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 중인 산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민간업체에 해외 패션쇼 참석을 위한 초청장 및 여행경비 부담을 요구하고,
- 마차 행사 주최 측이 직접 초청 및 경비를 부담해준 것처럼 허위 공무원외여행 심사를 받아 자신과 직근 상사의 해외여행비로 총 640여만 원을 수수함.



공무원들이 업무와 관련한 행사 참석을 위한 여비를 주관사가 지원하지 않자(초청 여부 불문),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민간업체로부터 여비를 수수한 행위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위반임.



사례 62 공단 직원의 골프접대 수수

- 모 공직유관단체 A영업팀장은 광고업무 부서장으로 직무와 관련한 신문사甲에서 광고주·광고대행사 간부들을 상대로 한 고객관리 일환으로 '초청골프모임'을 초청받자,
- 회사에 보고하지 않고 반일 연가를 낸 후 행사장에 찾아가 골프 접대를 받음.

위 공직자가 직무관련단체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은 행위는 공직자 행동강령상 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위반임.

사례 63 금고은행·법인카드사의 공무원 해외여비 지원

- 공공기관과 금고은행·법인카드사로 계약하여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甲은행과 乙카드사는 실적 제고를 위해 공공기관 40여 개에 해외여행과 대체서비스(기프트카드, 문화공연 등)를 인센티브로 제공하자,
- 중앙행정기관 운영지원과 A주무관 등은 B과장의 승인 아래 호주·홍콩에 5명 각 200만 원씩 합계 1천만 원 상당의 여행경비를 수수함.
- 기초자치단체 C주무관 등 6명은 약 1천만 원 상당의 해외여행 경비를 수수하고, D주무관 등 2명은 동행할 수 없게 되자, 대체서비스로 100만 원 상당의 기프트카드를 수수함.

공직자들이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관련 단체에서 제공한 해외여행 및 기프트카드 등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위반임.

3 금품등을 주는 행위의 금지

제14조의2(금품등을 주는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제14조 제2항에 따라 자신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는 것이 금지된 공무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4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사례 64 공직유관단체 원장의 금품등 제공금지 위반

- 공직유관단체 甲연구원 A원장은 설 명절을 맞이하여 위 연구원의 감독 및 평가업무를 담당하는 상급단체 B사무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 '우리 연구원 연구 실적을 좋게 평가해 주어 고맙다'며 선물제공 의사를 전달하고 금 30만 원 상당의 선물세트 1개를 업무추진비로 구입하여 B사무국장에게 택배로 제공함.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연구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관련이 있는 상급기관 임원에게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를 초과하는 선물을 제공한 행위는 공직자 행동강령상 금품 등 제공금지 위반임. 또한 상급단체 B사무국장이 자신의 직무관련자인 甲연구원 A원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행위도 공직자 행동강령상 금품등을 주는 행위의 금지 위반임.



사례 65

지자체장의 공무원 대상 금품등 제공금지 위반

- 모 기초단체장 A군수와 소속 공무원들은 군수 업무추진비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중앙행정기관·광역자치단체 등 직무와 관련하여 외부기관 공무원들에게 업무 협의 및 위로·격려 명목으로 총 85회에 걸쳐 3천3백여 만 원에 상당하는 현금·상품권·한우세트·젓세트 등의 금품 등을 제공함.



A군수와 부하 공무원들이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행위는 자신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는 것이 금지된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의2(금품등을 주는 행위의 금지) 위반임.



4 경조사의 통지 및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제17조(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에 대한 통지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 대한 통지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한 통지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
- ② 공무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소속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금품 등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공무원과 친족 간에 주고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2.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회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3.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정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사례 66 직무관련단체에 경조사 대리통지 행위 등

- 모구청 A건축과장이 장인 상을 당하자 건축과 직원들은 도시국장 명의로 과장의 경조 사실을 직무관련단체인 시 건축사협회에 FAX로 통보함.
- 이에 건축사협회는 회원 전체에게 FAX로 전송하였으며, 그 결과 20만 원 상당의 조의금 21건 총 420만 원을 경조금으로 받음.

공무원이 위와 같이 FAX 등을 통해 자신 및 타인의 경조사를 자신의 직무관련자 등에게 통지한 행위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17조를 위반한 것이며, 위와 같이 경조사금 5만 원을 초과하여 수수한 행위도 동 행동강령 제17조 위반임. →경조사 기준금액인 5만 원을 초과한 경조금은 되돌려 주어야 함.

사례 67 업무지원시스템을 통한 직무관련자 대상 경조사 통지

- 모 기초자치단체 A과장은 아동, 보육, 장애인 등 사회복지업무를 총괄하는 자로, 자신의 딸 결혼 사실을 부하직원을 시켜 업무지원시스템을 통해 관내 보육시설, 유치원, 학원 등에 통보하였고, 관내 유치원연합회 회장으로부터 경조금 20만 원을 수수함.

공무원은 허용된 방법 및 대상을 제외하고는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통지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직무관련업체에 공용물인 업무지원시스템을 통해 경조사를 통지하고, 직무관련협회 회장으로부터 5만 원을 초과하여 경조금을 수수한 행위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및 제17조(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위반임.

사례 68 직무관련단체에 명함을 동봉한 청첩장 통지

- 모구청 구청장 비서관 A는 자신의 결혼식을 앞두고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방위협의회, 복지관, 요식업협회, 유흥지회 등 관내 직능단체 40여 곳에 자신의 명함을 동봉한 청첩장을 보내고 위 단체 회원들로부터 5만 원을 초과하는 축의금을 다수 받음

공무원이 관내 직무관련 단체에 자신의 명함을 동봉한 청첩장을 통보하는 행위와 해당기관 행동강령에서 정한 한도인 5만 원을 초과하여 수수한 행위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17조(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위반임 →경조사 기준금액인 5만 원을 초과하여 수수한 경조금은 되돌려 주어야 함

사례 69 업체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통한 경조사 통지

- 모 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장A는 곧 있을 자신의 딸 결혼식을 알릴 목적으로 관내 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미리 준비해 둔 결혼식 알림장을 위 대표들에게 전달하면서 다른 업체 대표들에게도 동 경조사를 적극 알려달라고 부탁함.
- 또한 청사현관 출입구 유리창에 위 결혼식을 알리는 내용의 안내문도 상당기간 게시하여 모두 30여 개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10~50만 원까지 합계 700만 원 상당의 축의금을 받음.

직무관련자와의 간담회에서 경조사를 고지하거나 청사현관 출입구에 자신의 경조사를 게시하는 행위와 5만 원을 초과하여 수수한 행위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17조(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위반임.

사례 70

홈페이지를 통한 직무관련자 대상 경조사 통지

- 모 공직유관단체 임직원들은 기관 홈페이지 하단에 ○○동우회(퇴직 임직원들의 친목 모임)란을 만들어 경조사를 등재함으로써 로그인 없이도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한 상태로 경조사를 공지함.



경조사를 통지함에 있어 신문, 방송 및 내부통신망을 통한 통지 등 공직자 행동강령상의 예외적 허용 범위를 넘어 홈페이지 등 일반인에게 공개된 형태로 알리는 것은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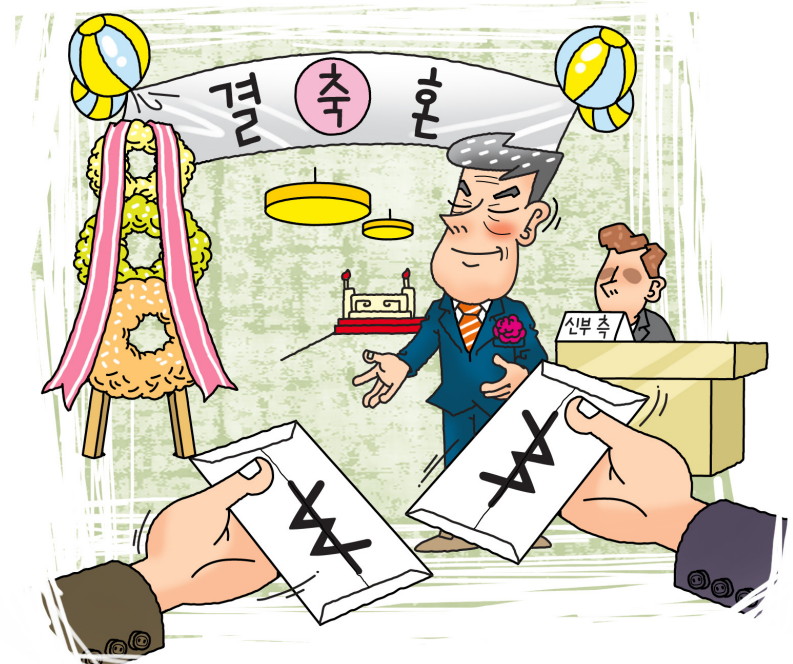
사례 71

직무관련 경조사 통지 및 경조금품 초과 수수

- 모 중앙행정기관 간부공무원A는 자신의 장녀결혼식에 참석하도록 교육청, 국립대학교 등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유관기관 직원들에게 경조사를 통지하고 5만 원을 초과한 경조금품 8건, 80만 원을 수수함.
- 모 기초자치단체 세무과장B는 자녀결혼식에서 직무관련성이 있는 감정평가사 2명으로부터 20만 원씩 합계 40만 원을 수수하는 등 5만 원을 초과한 경조금품 91건, 540만 원을 수수함.



공무원은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통지해서는 아니되고, 이들로부터 5만 원을 초과하여 경조금품을 수수할 수 없으므로 공무원 행동강령 제17조(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위반됨.



5 공용물의 사적 사용 · 수익의 금지

제13조(공용물의 사적 사용 · 수익의 금지) 공무원은 관용 차량·선박·항공기 등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사례 72 개인차량에 방역 작업용 휘발유 주유

- 모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A주무관은 하절기 방역작업에 사용하다 남은 방역 작업용 휘발유를 방역 요원으로 하여금 20리터 통에 가득 담아 가져오게 한 후 자신의 차량에 주유함.



공무원이 공용물인 공공휘발유를 자기 차량에 주유하는 행위는 ‘공무원은 공용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공용물의 사적 사용 · 수익의 금지) 위반임.

사례 73

단체장 부인이 공용차량 사용

- 모 기초자치단체장 A시장은 약 2년간 자신의 부인이 사회봉사활동을 가거나 개인적으로 교회를 방문할 때 일반 업무용 차량과 운전기사를 이용하도록 함.
- 이에 시장 부인은 휴일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수시로 시청의 차량 운영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차량 배차를 요청하였고, 동 차량을 이용하여 교회방문, 사회봉사활동 및 개인용무 등에 사용함.



공무원은 업무용차량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부인으로 하여금 업무용차량과 운전기사를 이용하게 한 것은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공용물의 사적 사용 · 수익의 금지) 위반임.

사례 74

공사감리용 차량 출 · 퇴근에 사용

- 모 공직유관단체 A차장은 도로공사 현장감독소장으로 발령 받자 자신의 승용차는 현장사무실 앞에 주차해둔 채 공사감리용 차량을 자신의 출퇴근과 개인적인 용무로 평일은 물론 휴일에도 사용하였고 소요되는 차량의 연료도 소속단체 예산으로 구입해 사용함.



공직자가 공용물인 공사감리용 차량을 업무와 관련 없이 출퇴근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과 그 차량 연료비를 예산으로 처리하는 것은 공직자 행동강령상 공용물의 사적 사용 · 수익의 금지 위반임.

사례 75 지자체 공무원의 기관SMS를 이용한 경조사 통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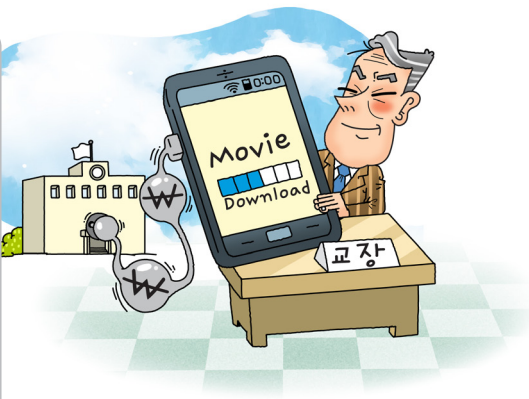
- 모 기초자치단체 A국장은 자녀 결혼식을 앞두고, 관내 직능단체·협의회 등 지도 감독관계에 있는 직무관련자들에게 1차 경조사 안내 통지를 하였고,
- 재차 소속 직원들을 시켜 직무관련자들을 포함한 570여 명에게 기관내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소속기관명과 직위가 기재된 SMS(문자메시지)를 발송함.

A국장이 사적 행사인 자녀의 결혼식에 소속직원들을 시켜 공용물인 구청 전산시스템으로 SMS(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에 위반된 것이고, 직무관련자들에게 경조사를 통지한 행위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17조(경조사 통지 제한 등) 위반임.

사례 76 업무와 무관한 데이터 통화 사적 사용·수익

- 모 초등학교 A교장은 2년에 걸쳐 학교장 업무용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업무와 상관없는 영화 다운로드 등 개인적 목적에 데이터통화를 이용하고 그 사용료를 학교 회계에서 집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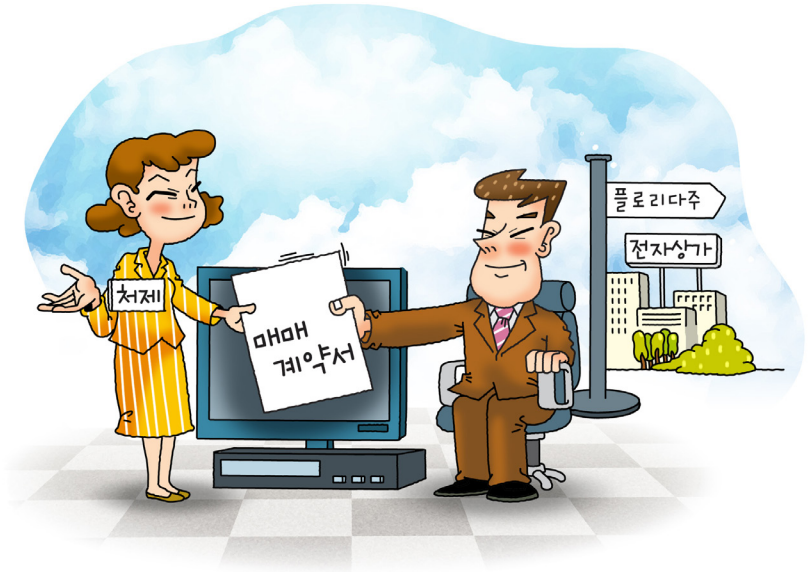
A교장이 예산으로 제공되는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정당한 목적없이 개인 목적의 부가서비스를 이용한 행위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위반임은 물론, 이를 통해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것으로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에도 위반됨.



사례 77 지자체 공무원의 업무상 구입 물품 불법 처리

-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A는 광역자치단체에 파견되어 소속 피감독기관인 공직유관단체 감독 업무를 수행하던 중, 피감독기관 직원 B와 함께 미국 Florida주로 공무 출장을 떠나, 업무상 현지에서 LCD TV와 DVD 플레이어(미화 \$1450, 한화 200만원 상당)를 구입함.
- 행사를 마친 A는 B에게 구입 물품은 자신이 처리하겠다고 말한 후, 당시 California 주 LA시에 거주하던 자신의 처제에게 미화 \$50에 이전한다는 허위 매매 계약 서류를 작성하여 전달함.

출장 중 예산으로 구입한 공용물인 LCD TV와 DVD 플레이어를 자신의 처제에게 허위 양도서류를 꾸며 제공한 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한 것으로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위반임.



사례 78 교장의 학습용 교구 물품 사적 사용

- 모 고등학교 A교장은 과학학습용 교구로 산악용 GPS를 구매하도록 담당부장 B 교사에게 지시하였고, B교사는 학습 교구를 구매하기 위해 과학교구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함에도, A교장의 지시에 따라 허위로 교구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것처럼 꾸며 60만 원 상당의 산악용 GPS를 구매함.
- 이후, A교장은 학교 예산으로 구매한 산악용 GPS를 본인 집으로 가져가 등산 목적 등 개인용으로 사용함.

공용물인 학습용 교재를 등산 등 개인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위반임.

사례 79 용도 폐기 관청 관사를 주거 사용 및 임대 활용

- 모 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의 관사 관리 업무를 하는 A주무관은 관리하던 관사가 정부조직개편, 건물노후 등의 이유로 용도 폐기된 상태인 점을 이용하여 자신의 주거용으로 사용함과 동시에 관사 일부를 주변 공장 근로자 등에게 월임대료를 받고 임대 운영함.

국유 재산인 관사를 공무원 개인의 거처로 사용하고, 타인에게 임대료를 받아 수수하여 이익을 얻은 행위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위반임과 동시에 제10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위반임.

사례 80 사적으로 대학 출강 중 관용차량 부당 사용

- 모 위원회 간부공무원 A위원은 겸직허가를 받고 근무시간 중 지방소재 대학교에 출강함
- 그러나, 근무시간 중 사적 출강을 위해서는 연가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연가 등 별도의 근무상황 처리 없이 근무시간 중 무단으로 출강하면서 업무용 관용차량을 사용함.

근무시간 중 사적 목적의 대학 출강을 하면서 연가를 사용하지 않아 연가 보상비가 부당집행된 것은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위반이고, 출강 중 관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은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위반임.



사례 81

구청 사용 토지 일부에 농작물 사적 경작

- ○○구 A과장 등 공무원들은 2008년~2009년까지 구청 양묘장 토지 중 일부에 직위를 이용하여 구청 공공근로 인부들을 동원해 배추, 무, 고추 등의 농작물을 개인 용도로 경작함.
- 경작에 동원된 인부들에게는 인부 인건비가 지급되었고, 경작지 왕래 목적으로 업무용 관용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면서 업무용 차량유류비를 지출하였으며, 공용 수목 관리 등에 사용하여야 할 부엽토 비료 등도 사적 경작 목적으로 사용함.



구청 사용 토지 일부에 사적 목적으로 농작물을 경작한 행위는 공용물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위반이고, 직위를 이용하여 자기 이익을 위한 사적 경작에 공공근로 인부들을 동원하여 인부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업무용 관용차량 유류비 및 비료 구입비 명목으로 예산을 지출한 행위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예산의 목적 외사용 금지) 및 제10조(이권개입 등의 금지) 위반임.

사례 82

관사에 업무용 컴퓨터 설치·사용

- 지방 일선부서의 기관장으로 발령 받은 공무원이 퇴근 후 자신이 거주하는 관사에서 잔무를 본다든 명목으로 업무용 컴퓨터를 관사에 설치하여 사용함.



공직자가 기관 소유의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는 경우는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됨. 관사를 개인주택과 달리 공적인 업무수행 장소의 연장으로 보더라도, 관사에서의 컴퓨터 사용이 업무수행상 필요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행동강령 위반이 아닌 것으로 판단 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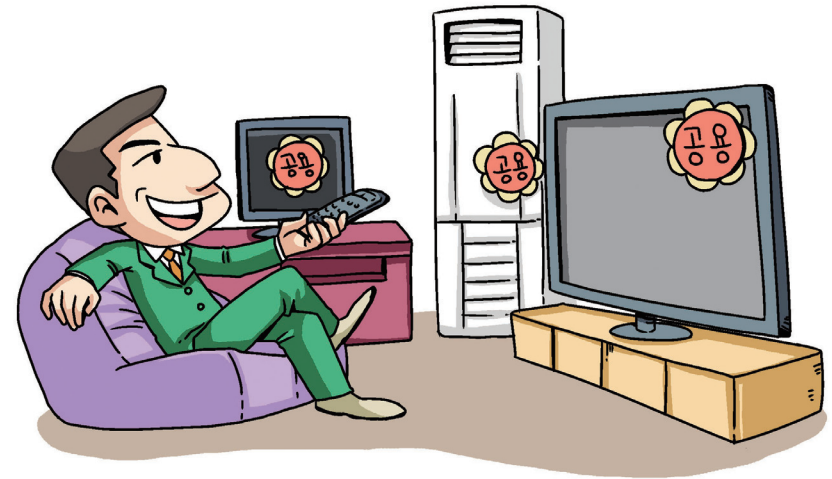
사례 83

공용물인 TV, 세탁기 등을 자택에서 사용

- 모 기관 소속 A서기관은 기관의 예산으로 구입하여 기관장 부속실에 비치된 TV와 세탁기를 자주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집으로 옮겨 사용함.



TV, 세탁기 등 예산으로 구입한 기관 자산을 개인이 자택으로 가져가 사용하는 것은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위반임.



사례 84

교육원장의 관용차 사적 사용

- 모 교육청 소속 교육원 A원장은 전용·의전용 차량이 아닌 업무용 차량을 자택으로부터 교육원까지의 출·퇴근에 사용하고, 이 과정에서 주유비 명목으로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함.



공무에 이용될 업무용 차량을 출·퇴근에 이용하는 행위는 공용물을 정당한 사유없이 사적 용도로 사용·수익하는 것으로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위반임.

사례 85

군 부대장의 공용물 사적 사용·수익

- ○○부대 부대장 A대령은 부인과 함께 고향, 유원지·관광지 방문 및 지인 병문안, 부인 배웅 등 38회에 관용차를 사적으로 운행함.



군 부대장이 공무에 이용되어야 할 관용차를 위와 같이 정당한 사유없이 사적 용도로 사용·수익하는 행위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위반임.

6 외부강의·회의등의 신고



제15조(외부강의·회의등의 신고)

- ① 공무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이하 “외부강의·회의 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 요청 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외부강의·회의 등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사례 86

고액 강의료 수수 후 미신고

- 모 중앙행정기관 기업업무 담당 공무원 2명(4급 및 6급)은 직접적으로 직무와 관련이 없는 일반 민간기업에 연가처리하고 출강하면서 기업관련 강의를 한 후 각각 100만 원의 강의료를 받고 신고하지 아니함.
- 모 중앙행정기관 감사공무원 A사무관과 B주무관은 정기 감사를 앞두고 있는 피감 기관으로부터 ‘감사담당 공무원 연찬회’에서 피감 요령에 관한 강의요청을 받고 연찬회에 출강하여 사례 및 기법을 각각 1시간씩 강의한 후 강의료 명목으로 100만 원씩 지급받고 신고하지 않음.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에서는 직무관련성의 여부를 불문하고 대가를 받는 외부강의 등을 한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것은 행동강령 위반임.

사례 87 **공직유관단체 직원의 외부강의 신고 위반**

- 모 공직유관단체 A과장은 디자인문화업무관련 부서장으로 근무 중, 승인을 받지 않고 약 10개월에 걸쳐 매주 4~8시간씩 甲대학교에서 외부 강사로 활동함.

공무원이 외부강의 등을 실시할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사전 신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한 행위는 공직자 행동강령상 외부강의·회의등의 신고 위반임.

사례 88 **사립대학교에서 요청한 외부강의 신고 누락**

- 모 교육청 A사무관은 甲사립대학교로부터 본인 직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1학기 동안 강의를 요청받아 총 350여만 원의 대가를 받고 강의함.
- 소속 기관장으로부터 복무규정에 따라 겸직허가를 받았고, 공공성이 있는 학교에서 하는 강의라 별도의 신고는 필요없다고 생각하여 해당 외부강의를 미신고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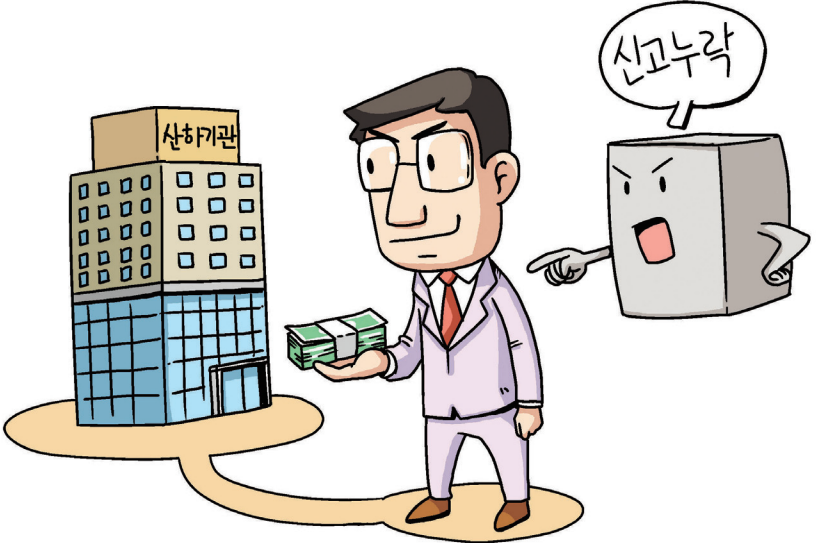
공무원이 겸직허가를 받았더라도 대가를 받은 외부강의이고, 강의를 요청한 기관이 사립대학교인 경우 공공성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해야 하므로 신고를 누락한 A사무관의 행위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외부강의·회의등의 신고) 위반임.

※ 다만, 국공립학교에서 강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요하지 않음.

사례 89 **대가를 받는 외부강의 미신고**

- 모 중앙행정기관 A본부장은 2005년부터 산하기관인 공직유관단체에 직무와 관련된 강의를 하면서 총 7회 출강하여 회당 60만 원~90만 원까지 모두 510만 원의 강의를 지급받았음에도, 수령한 강의료 일부를 미신고함.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에서는 공무원이 출강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부 강의료를 신고하지 않는 것도 행동강령 위반임.



공무원 외부강의 대가기준의 이해

■ 외부강의 대가기준(상한액)

- 권익위는 외부강의에 대한 적정 수준의 가이드라인(상한액) 제시
→ 중앙공무원교육원 강의로 지급기준 준용
- ※ 본 가이드라인은 외부강의의 대가 지급기준이 아니고, 기준초과 금액은 받을 수 없는 상한액 개념으로, 직무관련 강의·강연에만 적용

(단위: 천원/1시간)

중앙공무원교육원 외부강의 대가 지급기준

구분	장·차관급	과장급 이상	5급 이하	비고
상한액	400(장관)·300(차관)	230	120	원고료·여비 미포함
1시간 초과	300·200	120	100	원고료·여비 미포함

- 각급기관은 위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자체기준을 정하여 시행(기관별 행동강령 또는 별도 지침 마련 등)
- 강의 횟수에 대한 제한은 복무관련 규정에 따라 소속부서장이 직무를 고려하여 판단

■ 외부강의의 관련 제도적 관리체계 강화

- 쉼직원 대상으로 외부강의의 관련제도 교육·홍보 강화
- 기관별 외부강의의 신고시스템을 직원들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축·정비
- 각급기관 행동강령책임관은 분기별 외부강의의 실태를 파악해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 소속 부서장에게 주의조치
- 외부강의의 규정 위반자는 징계 등 조치를 통해 경각심 고취
- 권익위는 필요시 각급기관의 외부강의 대가기준의 적정성 및 운영실태에 대한 점검 실시

7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제5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① 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신, 자신의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2.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4.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상담요청을 받은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해당 공무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직근 상급자가 그 권한의 범위에서 그 공무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재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재배정하고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직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례 90 **용역사업 수행 중 이해관계 직무회피 불이행**

- 모 대학교 설계학과 A교수는 국제공항의 방수공사 공법 선정을 위한 용역(7천만원)을 甲건축학회로부터 의뢰받아 용역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법 선정’ 공고 결과 9개 업체가 응찰하였고, 그 중에는 자신의 처가 등기이사로 있는 乙업체도 포함된 사실을 인지함.
- A교수는 이 사실을 행동강령책임관 등과 상담하지 않고 선정위원으로 직접 참여하여 乙업체가 제시한 공법 및 내용을 심사하면서 최고 점수를 부여하여 결국 乙업체가 낙찰되도록 함.

공무원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의 직무관련자가 자신, 자신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 관련되거나 4촌 이내의 친족인 경우 등에는 당해 직무의 회피 등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에 따라 소속기관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 후 처리하여야 하나, 이를 결함으로써 행동강령을 위반함.

사례 91 **시험관리 공직자의 이해관계 직무회피 불이행**

- ○○대학교 A교수는 공인시험 출제 및 채점을 주관하는 소속기관장으로 근무하면서, 시험의 공정성 확보와 부정을 막기 위해 내부규정으로 관련업무자와 그 가족은 응시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 자기 자녀B의 대학 입시에 공인시험 성적이 필요하게 되자, 이를 돕기 위해 규정을 어기고 자녀를 해당 시험에 총 9회 응시하게 함.

자녀의 시험 응시를 묵인한 행위 자체가 특혜인지는 별론으로 하고, 내부 규정상 응시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여부를 행동강령책임관 등과 상담하지 않은 것은 공직자 행동강령상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위반임.

사례 92 **사촌이 신청한 건축허가 심의**

- 모 시청 건축심의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는 A국장은 최근 이종사촌동생으로부터 ‘이번 건축심의위원회에 자신의 땅이 건축물 신축허가 건으로 회부됐으니 형님이 편의를 잘 봐 달라’는 부탁 전화를 받음.
- 이에 A국장은 위원회 내에서 영향력이 센 편인 타 건축심의위원들에게 잘 봐달라며 사전에 연락을 취해 동생이 신청한 건축물의 신축허가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결국 다른 위원들의 반대 없이 통과되도록 처리함.

이종형제는 민법상 4촌 이내의 친족으로서 직무관련자에 해당되어 국장이 건축심의위원으로서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직무수행이 곤란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사촌동생이 신청한 건축허가에 대한 심의에 관한 직무회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이를 결함으로써 행동강령을 위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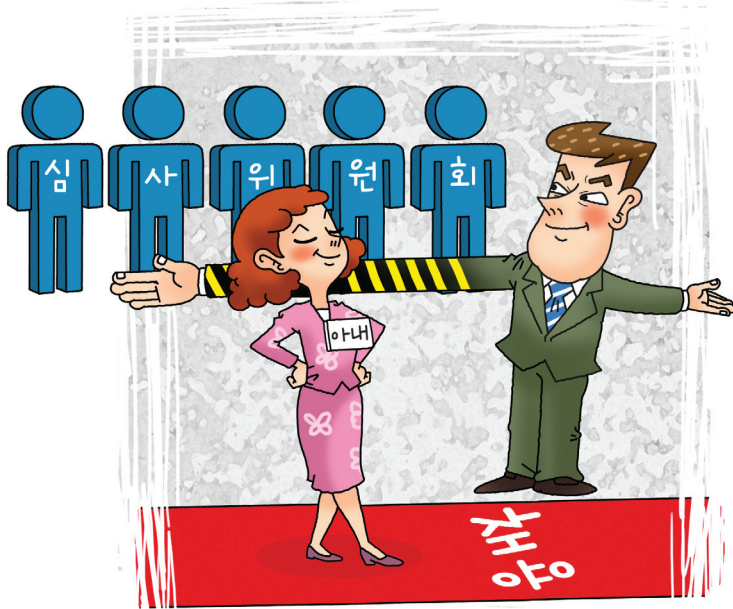
사례 93

파견공무원의 자신의 처 특혜 채용

- 모 기초자치단체 A공무원은 산하 공단에 파견되어 인사 업무를 총괄하는 경영지원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자신의 처를 위해 인사위원회 심의를 생략하도록 인사규정을 임의로 개정한 후, 별도의 공고 없이 1인 면접을 통해 정규 직원으로 특별채용함.
- A공무원은 상급자(이사장)에게 사전 보고하지 않았고 채용담당 직원에게도 알리지 않는 등 일련의 채용 절차를 비밀리에 진행함.



이해관계 직무에 대하여 회피 여부 등을 직근 상급자 등과 상담하지 않은 행위, 혈연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준 행위 및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타인 등에게 부당한 이익을 부여한 위 행위는 각각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제6조(특혜의 배제) 및 제10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위반임.



8 특혜의 배제

제6조(특혜의 배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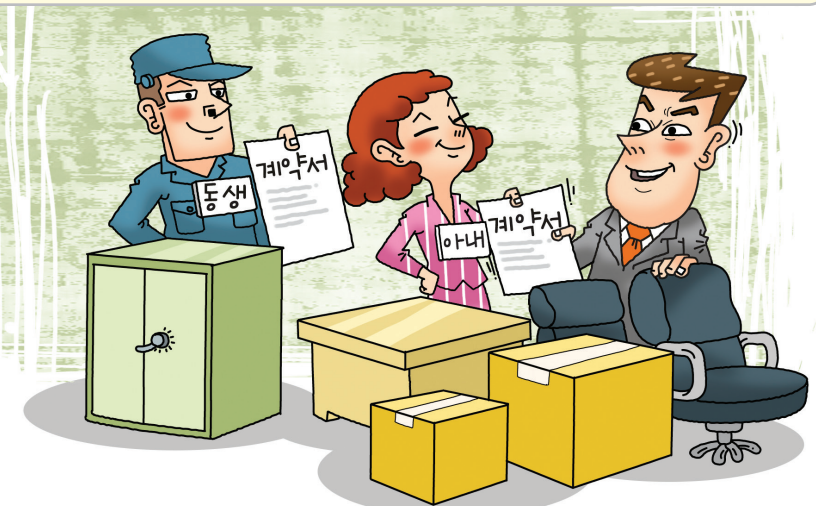
사례 94

처·동생 운영업체 수의계약 특혜 제공

- 모 지방자치단체 세무회계과 경리담당 A는 예산으로 구입하는 공공기관 배치용 집기류 및 가구 등을 자신의 처와 동생이 운영하는 업체와 총 5회 금 5천4백여만 원 상당의 수의 계약을 체결함.
- A공무원은 이해관계 직무와 관련하여 직근상급자 내지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지 않고 직접 계약 과정에 참여함.



계약에 관한 포괄적 직무관련성을 인정받는 경리 담당이 직근상급자 내지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 등 검토없이 계약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자신의 처와 동생에게 부당 이익을 부여한 행위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제6조(특혜의 배제) 및 제10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위반임.



사례 95

공무원 자녀의 공공근로사업 참여 특혜 제공

- 모 기초자치단체 읍사무소에서 공공근로사업을 담당하는 A주무관은 해당 자치단체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에 의거 공무원 자녀의 경우 공공근로사업 참여가 배제됨에도,
- 국민건강보험 가입내역 등 증빙서류를 징구하지 않고 허위 확인하여 동료직원의 자녀가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특혜를 부여함.



위와 같이 공무원 자녀의 사업 참여 자격을 배제한 지침을 어기고 혈연 등을 이유로 동료공무원에게 특혜를 부여한 행위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6조(특혜의 배제) 위반임.

사례 96

국립대학교 교수들의 신규교수 특혜 채용

- 모 국립대학교 교수 3인은 특정인A를 채용하고자 했으나 1차 심사 후 교무처로부터 다른 경쟁 응시자B가 1순위, 특정인A가 2순위로 통보받자, 강의능력 부족을 이유로 면접추천을 임의로 거부하는 등 신규채용 자체를 무산시키고,
- 2차 심사에서 이번엔 특정인A에게 강의능력 점수를 경쟁자들보다 월등하게 부여하는 방식으로 4위에서 1위로 순위를 바꾸어 최종 합격시킴.



위 교수들이 교수 신규채용과정에서 부적격한 특정인을 합격시켜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고 적격자들을 탈락시켜 차별한 행위는 각각 공무원 행동강령 제6조(특혜의 배제) 및 제10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위반임.

사례 97

지인을 부당하게 학교직원으로 채용

- 모 초등학교 A교장은 학교에서 특수교육보조원 1명을 채용하는 계획을 알고 자신이 전 근무지에서 친하게 지내던 동료교사의 자녀 B에게 모집공고 전 채용시험에 응시하도록 알려주었음.
- 서류심사 결과 지인 B가 10배수 내에는 들었으나 순위가 3위에 불과하자 면접시험에 함께 면접관으로 참여한 교무부장 등에게 후한 점수를 줄 것을 부탁하고, 자신도 B에게 후한 점수를 주어 합격시킴과 동시에 경쟁자들에게는 이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점수를 주어 고의로 탈락시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 됨에도 지인에게 채용계획을 사전(공고전)에 알려주고, 시험에서도 의도적으로 특정인에게는 높은 점수를 주면서 다른 응시자에게는 낮은 점수를 주어 특정인을 채용한 행위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6조(특혜의 배제) 위반임.

사례 98

상사의 고교동창에게 수의계약 특혜 제공

- 모 공직유관단체 A운영국장은 간부회의에서 외부전문가로 초청되어 특강을 할 예정인 B교수가 소속기관장 C의 친구(고교 동창)임을 알고 나서, 그 해 교육훈련장비에 관한 연구용역 시행자를 B로 특정하여 5천만 원 상당의 수의계약 특혜를 부여함.



학연 등을 이유로 특정인(업체)에게 특혜를 주는 행위는 공직자 행동강령상 특혜의 배제 위반임.

사례 99

교장이 자기 자녀를 직원으로 특채

- 모 초등학교 A교장은 학교 회계직 과학실험보조원 1명을 채용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교감, 교무부장, 행정실장 등으로부터 관련 규정에 따라 공개채용의 절차에 따라서 처리할 것을 여러 차례 건의받음.
- 그러나, A교장은 이를 묵살하고 비공개 특별채용 계획을 확정하여 단독으로 응시한 자신의 자녀를 과학실험보조원으로 특채함.



학교장이 공개채용 절차를 무시하고 자신의 자녀를 학교 직원으로 특채한 행위는 특정인에게 특혜의 제공을 금지한 공무원 행동강령 제6조(특혜의 배제) 위반임.

사례 100

승진대상자들에 대한 시험 준비 특혜 제공

- 모 도청 사업본부 A과장은 고교 후배인 부하직원 B주무관이 지난번 시험에서 한 차례 낙방한 경험이 있고, 시험공부에 대한 애로를 토로하자 충분히 시험공부를 할 수 있도록 3개월의 시험 준비기간을 주어 해당 직원이 업무를 보지 않고 자신의 집이나 독서실, 학원 등에서 사무관 승진시험 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음.



학연이 있는 승진대상자에게 업무를 부여하지 않고 사무관승진시험에 전념할 수 있도록 특별히 긴 시간동안 배려해준 행위는 특혜로서 공무원 행동강령 제6조(특혜의 배제) 위반임.

사례 101

손실보상 안내공문에 특정 세무사 소개

- 모 군청 해수욕장 경영사업소 직원 A는 관내 해수욕장 관광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사기간동안 영업을 못하게 되어 생긴 손실을 보상받을 대상자 848명에게 군청과 손실보상 협의를 요청하도록 안내하는 문서를 발송하였는데,
- 공사기간 동안의 영업 손실을 입증할 근거서류 준비와 관련, 안내문에 해당 사업 추진위원회 민간위원이자 동향 후배인 특정 세무사의 이름과 사무실 전화번호를 명시하고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세무사에게 직접 문의 및 상담하도록 하는 문구를 삽입함.



안내공문 등에 특정 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특정인(업체)을 표기하는 행위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특혜를 부여하는 것으로 공무원 행동강령 제6조(특혜의 배제) 위반임. 다만, 모든 관내 세무사의 사무실 전화번호 등을 일괄하여 안내문 등에 별첨하여 보낸 경우에는 위반이 아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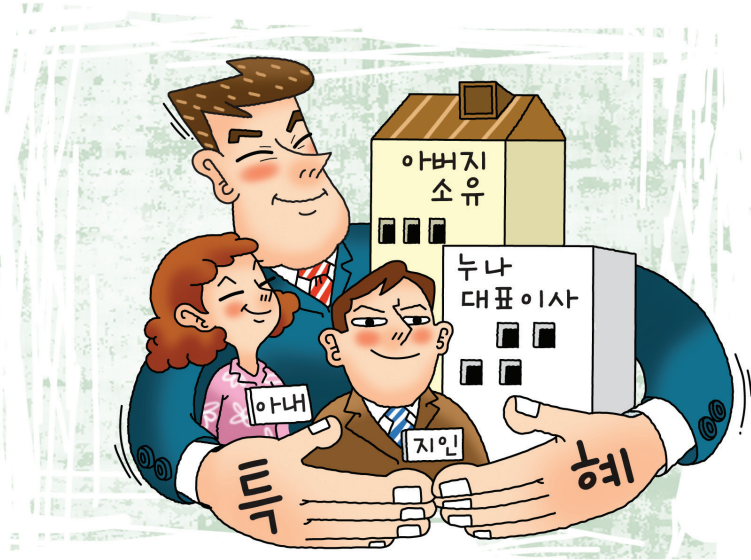
사례 102

공무원의 재단법인에 대한 특혜 제공

- 모 중앙행정기관 A팀장은 산하 기관인 甲재단법인의 당연직 감사를 겸직하면서, 甲재단의 직원 채용시험에 면접관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처 B와 지인 C를 합격시키고 이들을 각각 홍보팀장과 사업과장에 임명함.
- 이후 A팀장은 재단의 사업장 신설 시에는 자신의 아버지가 소유한 토지에 공실로 있던 창고 3개동을 임대 사용토록 재단에 지시하여 2년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고, 재단 사무실 이전 시에는 자신의 누나가 대표이사로 있는 乙업체가 소유한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도록 지시함.



당연직 감사를 겸직하면서 감사 업무와 무관한 재단 직원채용에 개입하여 자신의 처와 지인을 합격시킨 행위는 혈연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것으로 공무원 행동강령에 위반되고, 사업장 및 주사무실 선정에 개입하여 아버지와 누나의 건물을 임차하도록 지시한 행위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 6조(특혜의 배제) 위반임과 동시에 제10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위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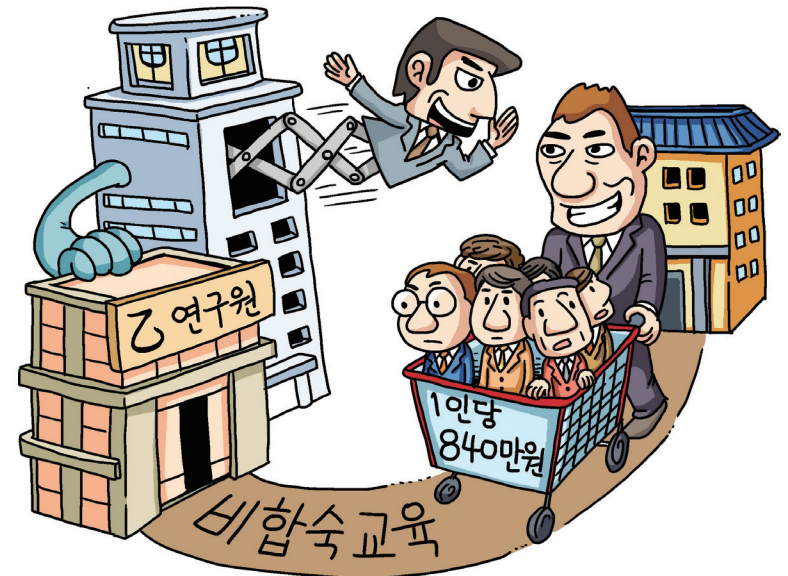
사례 103

특정연구원 위탁 교육에 고액수강료 특혜 제공

- ○○군 A과장 등 교육담당 공무원들은 지역 언론사인 甲기업 관계자의 청탁을 받고 나서, 해당 언론사 甲과 연관있는 乙연구원이 주관하는 20일간의 비합속 교육 프로그램 과정에 1인당 840만 원에 달하는 고액의 교육비를 지출함.



외부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할 경우, 사전 위탁교육계획 등을 수립하여 과정 성격·비용·대상자·활용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직원 위탁교육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특정인(업체)의 청탁을 받은 후, 적절한 사전 계획도 없이 갑자기 특정직원들을 교육에 참여토록 하여 특정인(업체)에게 특혜와 이익을 얻도록 한 행위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6조(특혜의 배제) 및 제10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위반임.



9 이권개입 등의 금지

제10조(이권개입 등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사례 104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경력산정 특혜 제공

- 모 공직유관단체 A인사팀장은 자신과 직속상관 B실장의 채용 전 경력을 부풀리거나 인사규정을 소급해 호봉을 재산정하는 방식으로 약 3천여만 원의 급여를 과다 지급하였고,
- 자신과 경쟁관계에 있는 C팀장에게는 재직 중 야간대학에 재학한 기간 4년을 경력에서 임의로 차감해 산정하는 방식으로 400여만 원의 급여를 적게 지급함.



공직자가 인사팀장이라는 직위를 직접 이용해 경력산정을 허위 산정하는 방식으로 자신과 타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한 행위는 공직자 행동강령상 이권 개입 등의 금지 위반임.

※ '부당한 이익'에서의 이익이란? 직무행위에 영향을 미칠 만큼 충분히 가치 있는 것이고, 물품 등 재산상 이익이나 경제적 이익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기회 또는 정보 등 사회적 편의의 수수,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유·무형의 일체의 이익이 포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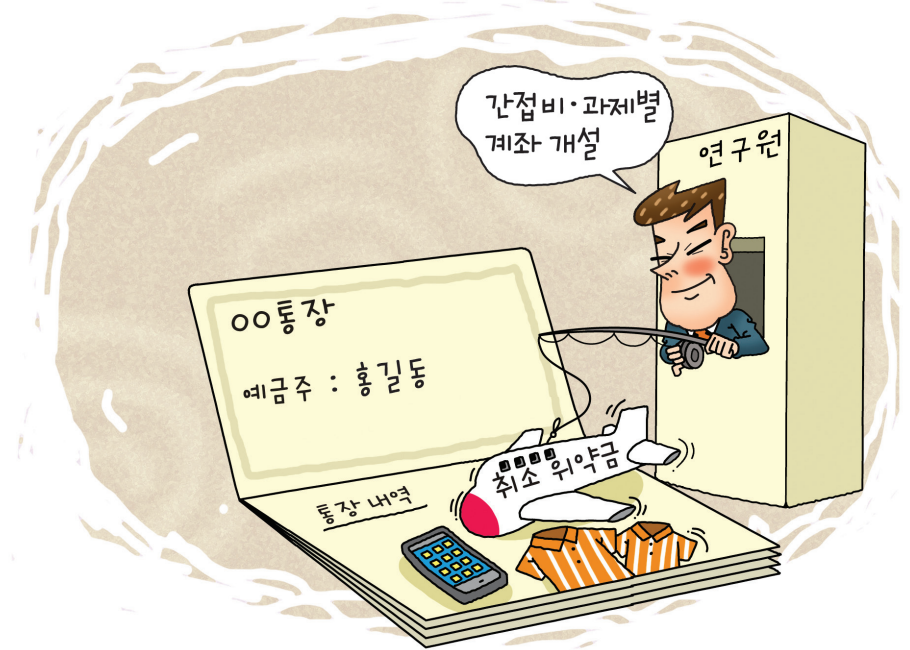
사례 105

연구용역과제 사업비 임의 관리 및 간접비 부담 집행

- 모 중앙행정기관 A원장은 법적근거 없이 총 35건의 외부연구과제를 위탁받아 직접 수행하거나 제3자 도급방식으로 수행하면서 사업비 약 55억 원 상당을 세입조치 없이 관리하고 사업비 일부를 할당하여 약 2억 원의 간접비를 임의 조성함.
- A원장은 부하직원 명의로 간접비 계좌 및 과제별 계좌를 개설하여 간접비 관리만을 위한 직원을 채용하기도 하고, 본인 핸드폰 구입 및 사용료, 직원 T-셔츠 구입, 항공권 취소 위약금 등에도 사용함.



위 공무원이 간접비 명목으로 확보한 사업비를 임의 할인하여 별도 계좌에 관리하면서, 이를 위해 직원을 채용하여 보수를 지급하거나, 핸드폰 및 T-셔츠를 구입하는 등 본인과 타인에게 부당이익을 부여한 행위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10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위반임.



사례 106

지자체 재산관리담당의 이권 개입

- 모 기초자치단체 회계과 A공유재산 관리팀장은 화장지 인근에 위치한 민원인의 농지와 시유지(임야)를 교환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되자,
- A팀장은 민원인B에게 시(市) 화장장 시설 증축정보를 알려주지 않은 채 오히려 자신의 임야와 그보다 3배 비싼 민원인의 농지를 맞교환하자고 제의하였고,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를 위반하여 허위의 매매계약을 통해 이를 취득함.
- A팀장은 이렇게 취득한 해당 농지를 시유지(농지)와 다시 교환함으로써 추가로 부당한 이익을 취득함.



위 공무원이 처리한 업무는 자신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 관련이 있고, 그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것이며, 직무 수행 중 알게된 정보를 이용하여 재산상 거래를 한 것으로 각각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제10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및 제12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의 위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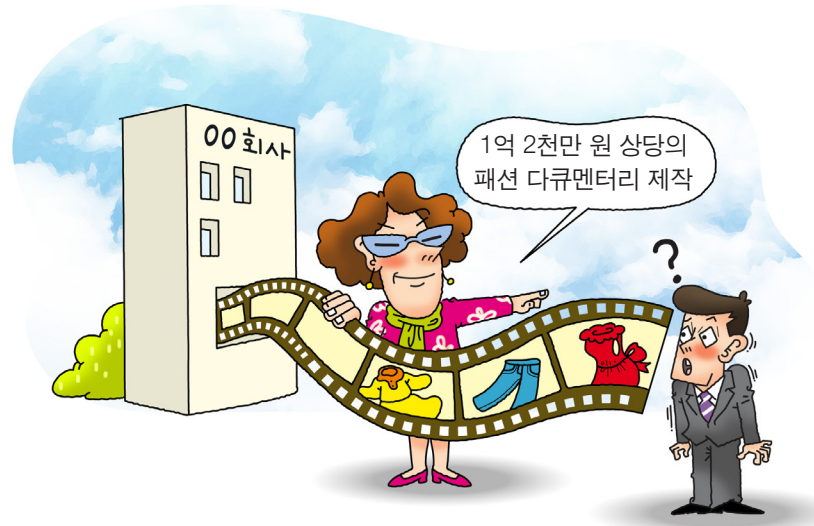
사례 107

특정업체 소개를 통한 하도급 강제

- 모 광역자치단체 계약직 A공무원은 글로벌 패션브랜드 육성사업을 담당하면서,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산하기관(甲진흥원) 직원B를 청사로 불러 특정업체를 소개하고 1억2천만 원 상당의 패션다큐멘터리를 제작하도록 강제 지시하였고,
- 이후 甲진흥원과 계약을 체결한 민간업체(乙사)에도 특정업체 대표를 소개하여 홍보용역 중 일부를 하도급으로 수행하게 함.



공무원이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해 특정업체에 이익을 부여하기 위해 산하기관에 압력을 행사하고 계약을 강제하는 행위는 타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한 것으로 이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10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위반임.



사례 108

학교장의 물품납품 관련 이권 개입

- 모 고등학교 행정실 A실장은 교실 및 교장실 등에 커튼을 설치하기 위해 각 업체에 견적서를 제출받는 등 공정한 절차를 거쳐 업체를 선정하려 하였으나,
- 위 학교 B교장은 평소 자신이 알고 지내던 후배 C가 운영하는 커튼업체乙사가 선정되도록 A행정실장에게 지시하여 이 업체가 수백만 원 상당의 커튼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납품토록 함.



학교장이 자신의 직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특정업체가 커튼을 납품토록 행정실장에게 지시한 행위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10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위반임.

사례 109

학교장의 부당한 해외연수 대상자 모집 행위

- 모 중학교 A교장은 관내 여행업체 명예회장을 하고 있는 전직 교장출신 선배B로부터 '학생들이 방학 때 개별적으로 해외 문화탐방(해외연수)을 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을 받자,
- 학생들을 대강당에 소집케 한 후, 학생부장 교사로 하여금 학생들에게 해외견문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연설을 하도록 한 후 해외여행 신청서를 배부하여 모두 70명의 학생들로부터 해외여행 신청서를 접수받아 그 명단을 여행업체에 넘겨줌.



여행사 영업활동에 학교장의 직위를 이용하여 학생을 모집하고 명단을 제공한 행위는 특정 여행사의 이익을 도모한 행위로서 공무원 행동강령 제10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위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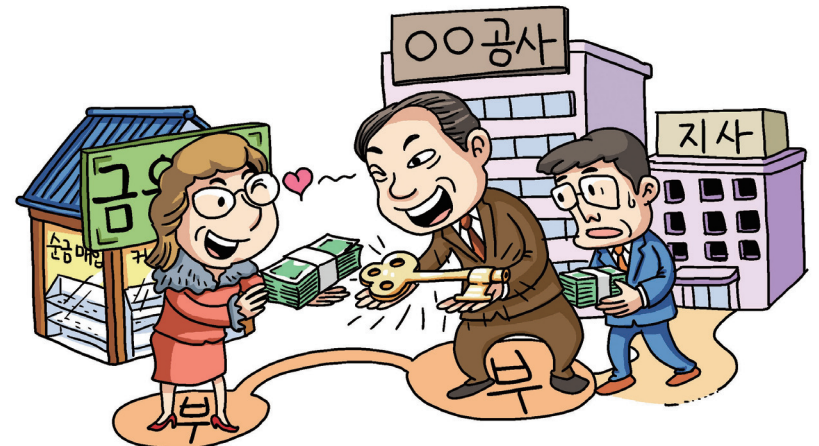
사례 110

처 소유의 가게에서 시가보다 비싸게 기념품 구입

- ○○공사 지역본부 A팀장은 퇴직자 기념품으로 제공할 순금 행운의 열쇠를 제작하기 위하여 당시 자신의 처가 운영하던 금은방에서 시중 금 시세보다 비싸게 800여만 원을 들여 행운의 열쇠를 직접 구매하고, 산하 지사에도 6천여만 원의 기념품을 구매토록 유도함.



직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처가 운영하는 업체에서 시세보다 비싼 가격으로 물품을 구매하여 자신의 처가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한 행위는 공직자 행동강령상 이권 개입 등의 금지 위반임.



10 알선·청탁 등의 금지

제11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 ①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 ②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아니 된다.

사례 111

부당한 인쇄물 수주 청탁

- 모 중앙행정기관 총무팀 소속 공무원 A는 인쇄물 용역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기 위해 각 인쇄업체에 견적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 소속기관 감사팀장 B는 같은 고향출신으로 잘 알고 지내던 출판업자 C가 인쇄물 용역을 수주받을 수 있게 A에게 금번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위 업체와 수의계약을 하도록 부당한 청탁을 함.



비록 B팀장이 업자로부터 금전을 수수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특정 인쇄업체가 인쇄물을 수주 받을 수 있도록 담당공무원에게 청탁한 행위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11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위반임.

사례 112

납품업자의 부당한 이익을 위한 소개 행위

- 모 기초자치단체 A부군수는 산악회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인조잔디 납품업자로부터 군 공설운동장에 자기 회사의 인조잔디가 납품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자,
- 군청 담당과장을 부군수실로 호출하여, 위 잔디납품업자를 담당과장에게 소개시켜주면서 잔디를 납품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적절히 이용하여 도와주라고 말함.



비록 부군수가 위 업자로부터 일체의 금전을 수수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위와 같이 직무관련자를 담당 공무원에게 부당하게 소개한 행위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11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위반임.

사례 113

공직유관단체 본부장의 계약담당 직원 알선·청탁

- 모 공직유관단체 A본부장은 청사 이전 과정에서 자신의 동문이 운영하는 업체와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건설업체를 계약담당 직원에게 자문요청 등의 명목으로 소개하였고,
- 이들 업체들이 신사옥의 인테리어 공사 수주, 신규 비품·외부간판 제작 납품 등의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도와줌.



공직자는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을 한 경우 그 실현 여부를 불문하고 공직자 행동강령상 알선·청탁 등의 금지 위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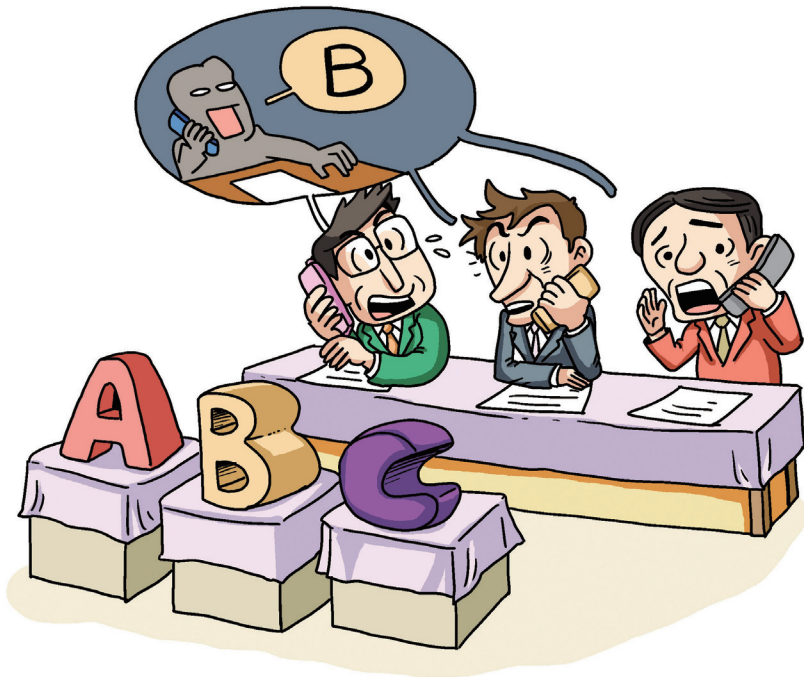
사례 114

심사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에게 특정 작품 거론

- 모 공직유관단체 임원 A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예산 지원 사업의 대상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심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과반수 이상의 심사위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특정업체의 출품작을 거론함.



공직자는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어떠한 형태의 알선·청탁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심사 과정에서 특정업체가 출품한 작품을 거론한 행위는 공정한 심사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것으로 공직자 행동강령상 알선·청탁 등의 금지 위반임.



사례 115

지자체 부군수의 담당공무원 알선·청탁

- 모 기초자치단체 A부군수는 고등학교 동창B로부터 받은 인·허가신청 민원서류를 인·허과장에게 건네주며 잘 처리하도록 지시하였고,
- 인·허과과로부터 허가요건 등에 대해 법적인 검토를 지시하여 보고받은 후 집무실로 자신의 동창B를 불러 직원들을 통해 직접 설명하게 하였으며,
- 위 인·허가신청이 서류미비로 반려되자, 부하직원을 통해 동창B의 민원 재접수를 강제하고 관련 위원회 심의에 상정토록 부당한 지시를 함.



동창생의 민원이라는 이유로 담당과장에게 잘 처리하도록 지시하고, 집무실에서 직원들이 동창생에게 설명하도록 하고, 민원이 재접수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접수 및 위원회 심의 상정을 강제한 행위 등은 통상적 수준의 업무지시를 벗어나 특정인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것으로써 이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10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및 제11조(알선·청탁 등의 금지)의 위반임.



11 인사 청탁 등의 금지

제9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 ① 공무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서는 아니 된다.
- ②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사례 116 승진인사 청탁

- 기초자치단체 7급 공무원인 A는 평소 안면이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 B를 찾아가 금번 6급 심사 승진 시 자신이 승진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을 하였고,
- B국회의원은 자신의 비서관을 시켜 해당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위 A공무원이 6급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청탁케 함.

공무원이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위와 같이 국회의원 등 타인을 통하여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청탁하는 행위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9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위반임.

※ 다만 공무원 자신의 인사에 관하여 직접 인사담당자에게 인사 희망부서 등 인사 고충 및 상담을 하는 것은 행동강령에 위반되지 아니함.



사례 117 대학교수 임용 인사 청탁

- 모 중앙행정기관 A국장은 평소 개인적 친분이 있던 한 언론사 대표 B로부터 자신의 아내 C가 甲대학 교수에 채용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는 청탁을 받자,
- 인가 및 지도·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甲대학 학장에게 C가 신입교수로 채용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인사 청탁을 함.

공무원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타 공무원의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비록 위 국장이 청탁 대가로 금전을 수수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공무원 행동강령 제9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에 위반되며, 청탁한 내용이 반드시 실현되지 않아도 행동강령에 위반됨.



12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제12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 ①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제1항에 따라 소관 분야별로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사례 118

법원직원의 직무정보 이용 재산상 투자행위

- 지방법원에서 경매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A는 동료 직원이 담당하는 경매 건 중 조사 당시의 채무가액에 비해 현재 채무가 수천만 원 이상 적은 부동산이 있음을 알게 되어 자신의 부인으로 하여금 경매에 입찰하도록 하여 예상대로 낙찰 받음으로써 차액 상당의 이익을 남김.



법원직 공무원의 경우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제12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규정에 의하여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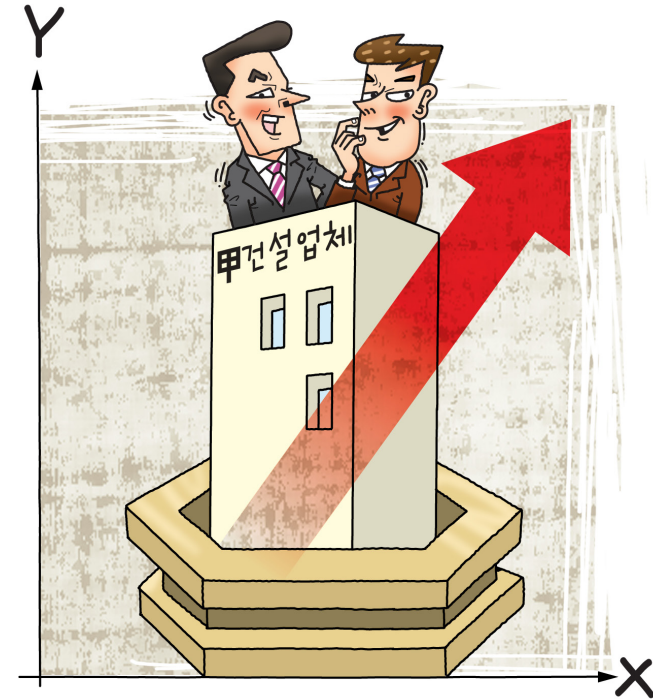
사례 119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입

- 모 중앙행정기관 조사담당 공무원인 A사무관은 상장기업인 甲건설업체를 직무상 조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업체가 대규모 토목공사를 수주하게 된다는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알게 되자, 동료직원과 함께 해당 업체의 주식을 다량 매입하였고 드디어 공사 수주가 공시되자 주가가 크게 올라 이를 매각하여 거액의 차액을 남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에 해당하는 주식을 매입하여 투자를 한 경우로 공무원 행동강령 제12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위반임.



사례 120

건설분야 공무원의 직무정보를 이용한 토지 매입

- 건설행정부서에서 근무하는 A는 업무수행과정에서 관할구역의 그린벨트지역을 일부 조정하고 해제하여 건축허가가 가능한 지역을 광범위하게 조성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관리계획이 입안되자,
- 자신의 처제 등 가까운 친·인척에게 일반인에게 공고되기 전에 개발제한구역 인근의 토지를 다량 구매케 하고 매각하는 방법으로 거액의 시세차익을 남김.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행위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12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위반임.



사례 121

직무 수행 중 취득한 부동산 매매 정보 부당 제공

- 모 기초자치단체 보육지원업무를 하는 A공무원은 관내 보육시설인 甲어린이집이 약 8천만 원 상당 급매물로 나온 사실을 알게 되자,
- 평소 종교생활을 하며 알고 지낸 지인B에게 매물 정보를 알려주고 출장 시 B를 甲어린이집으로 안내하는 등 시설장을 소개함.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행위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12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위반임.



13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제10조의2(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사례 122 국립대학교 교수의 소속기관 명칭 사적 사용

- ○대학교 A교수는 자신이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벤처기업 甲에서 자체 개발한 홍삼제품을 생산하면서,
- 마치 해당 국립대학교에서 생산한 것처럼 ‘○ ○대학교에서 심혈을 기울여 만든 최고의 건강식품입니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신문·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광고함.

위 교수가 공무원 신분임에도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목적으로 소속기관의 명칭을 사용하여 광고한 행위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10조의2(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위반임.



사례 123 기관명을 이용한 부당한 이익제공

- 모 중앙행정기관 A국장은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사단법인 OO협회 관계자 B로부터 당해 협회가 개최하는 「OOO 유료 미술대회」에 위 부처가 협찬하는 것처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 A국장은 자기 기관에서 마치 위 대회를 협찬하는 것처럼 현수막 등 광고물에 자신의 기관명을 사용토록 하여 많은 학생들이 위 대회의 공신력을 믿고 참가하도록 유도함.

공무원이 특정인의 이익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의 명칭 또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10조의2(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위반임.



14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한 처리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한 처리)

- 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사례 124

시간외수당 부당각출 지시

- 모 농업기술센터 A소장은 예산담당자B 등 부하직원들에게 시간외수당을 지급한 후 1인당 매월 1만 원씩 '회비' 명목으로 각출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하였고,
- 이렇게 조성된 약 1천3백만 원을 직무와 관련된 감독기관 공무원, 시의원 등에게 제공할 명절선물을 구입하는 등 기관운영과 대내·외 활동비로 집행함.
- 예산담당자B는 사유를 소명하고 A소장의 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해야 함에도, 오히려 각 과 서무직원 등에게 메일로 각출을 독려함.



부당한 업무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와 그 지시를 받은 부하직원이 소명 등 없이 오히려 독려한 행위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한 처리) 위반임.



사례 125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 지시

- 공립 고등학교 A교장은 가을수학여행을 앞두고 행정실장을 불러 자신이 이전 학교 교장으로 근무 당시 알고 지내던 특정 여행업체를 지목하여 계약할 것을 지시함.
- 행정실장은 관련 규정에 '수학여행 업체선정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이고, 공개경쟁입찰에 의해 투명하게 선정되어야 한다'고 되어있어 학교장의 지시 사항을 그대로 이행하기 곤란함을 소명(설명)함.
- 그러나 학교장은 여행업체 선정 권한은 자신에게 있을 뿐, 학교운영위원회와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재차 특정 여행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라고 일방적으로 지시함.



소명에도 불구하고 하급자인 행정실장에게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를 반복한 학교장은 공무원 행동강령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한 처리)위반에 해당되며, 부당한 지시를 재차 받은 행정실장은 즉시 소속 기관장인 지역교육청 교육장에게 보고하거나 소속 학교의 행동강령책임관인 교감에게 상담 후 처리하여야 함.



사례 126

특정업체 물품 구매 지시

- 모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청 B과장은 사무실에 복사용지 등이 필요함을 알고 서무 담당 직원을 불러 주로 공공기관에 문구류를 납품하고 있던 ○○문구와 500여만 원 상당의 복사용지 등 물품 구입 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함.
- 서무담당 C주무관은 내부규정에 '일정액 이상의 물품구매 시 3개 이상의 업체로부터 비교 견적을 받아 처리'하도록 되어있음을 근거로 과장의 지시에 따르기가 곤란함을 소명함.
- 소명에도 불구하고 과장이 담당자에게 재차 같은 지시를 내리자 인사상 불이익을 염려한 담당직원은 마지못해 ○○문구와 해당 물품에 대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납품을 받음.



상급자는 하급자(담당직원)에게 부당한 절차에 의해 물품을 납품받을 것을 지시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를 한 사실이 있고, 담당직원은 상급자의 지시가 부당한 것임을 알고 소명 후 지시에 따르지 않았으나, 재차 반복된 지시에 대하여는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이를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 없이 부당한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공무원 행동강령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한 처리) 위반임.



15 금전의 차용 금지 등

제16조(금전의 차용 금지 등)

-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4촌 이내의 친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과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으려는 공무원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사례 127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차용

- 모 공립고 A행정실장은 물품납품업체 甲사 C대표로부터 무이자로 1천만 원을 차용 후 3년 정도 지나 자신의 집 매각대금 잔금으로 이를 변제함.

구매 공무원과 납품업자 간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며, 이들간의 금전차용(이자 여부 불문) 내지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는 행위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16조 1항(금전의 차용 금지 등)에 위반됨.

사례 128 직무관련공무원인 친구로부터 금전 차용

- ○○위원회에서 평가업무를 담당하는 A사무관은 아파트를 계약 후 잔금이 부족하자 피평가 기관인 광역자치단체에서 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고등학교동창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시중은행이자 수준의 금리 연 8%로 금 5천만 원을 차용하고 아파트 입주 후 몇 달 뒤 원금 및 이자를 모두 상환함.

평가업무를 담당하는 위 위원회 A사무관과 피평가 기관인 광역자치단체 평가업무담당자는 직무관련공무원에 해당됨. 공무원 행동강령 제16조 1항은 공무원이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전차용 및 부동산 무상대여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는 것은 행동강령 위반임.



16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제8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 ① 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 ②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례 129 지방의회의원의 특정직원 채용 청탁

- 모 기초자치단체 A총무과장은 군의회 B의원으로부터 친척을 환경미화원에 채용해 줄 것과 만일 채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 심의 시 불이익을 줄 것이라는 전화를 받음.
- A과장은 고민을 거듭하다 이를 군수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채 인사계장과 협의하고 면접 당일 사전에 면접관들에게 좋은 점수를 줄 것을 부탁하여 B군의원의 친척이 합격하도록 도와줌.

총무과장이 정치인인 군의회의원으로부터 이러한 청탁을 받았을 경우에는 군수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 후 처리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과 군수는 인사과장이 공정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공무원 행동강령 제8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위반임.

사례 130 지방의회의원의 부당한 청탁

- 모 광역자치단체 상수도사업소 A과장은 시의회 B의원으로부터 사업소가 보관중인 블록 100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다며 부당한 반출 지시를 받았음에도
- 이를 소속기관장 등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지 않고 무단 반출하여 B의원이 해당 자재를 수산업자에게 제공하고 사례금 50만 원을 수수함.

공무원이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았을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 후 처리하여야 함.



공직자 행동강령 사례집 2013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행동강령 Q&A



제 3 장 행동강령 Q&A

1 직무관련자

공무원이 현재 담당하고 있는 소관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직무관련자”라 함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 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 나. 인가·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다. 수사, 감사(監査),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 라. 재결(裁決), 결정, 검정(檢定), 감정(鑑定), 시험, 사정(査定), 조정, 중재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마. 징집, 소집, 동원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 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 사.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아.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지방의회의 장, 교육감 및 교육위원회의 장(이하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라고 한다)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Q&A 1 직무관련자의 정의

Q 직무관련자란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는지?

A 직무관련자란 공무원 개인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개인이나 단체를 말하며, 그 구체적 범위는 기관별 공무원행동강령에서 정하고 있음.

Q&A 2 소관업무의 범위

Q 소관업무의 구체적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A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제1항에서 말하는 ‘공무원의 소관업무’란 법령, 훈령, 규정 등에 의하여 개인에게 부여한 업무 뿐만 아니라 행동강령 제정 취지상 일시적으로 타인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거나, 사실상 타인의 업무처리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도 공무원의 소관업무로 보아야 할 것임.

Q&A 3 동료직원의 직무관련자

Q A팀 직원 甲은 자신에게 배당된 민원인 金만이 직무관련자인지? 또는 같은 팀 소속 직원 乙의 민원인 李도 직무관련자인지?

A 직무관련자라 함은 원칙적으로 해당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된 자를 의미하므로, 동료 직원의 직무관련자인 李는 甲의 직무관련자라 할 수 없으며 甲의 소관 업무와 관련이 있는 민원인 金만이 직무관련자라 할 수 있음.

Q&A 4 중고자동차매매업자

Q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해당 지자체 차량등록사업소 공무원의 직무관련자인지?

A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사무를 신청 중에 있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로서, 중고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 구입자들을 대신하여 지자체 차량등록사업소에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을 하는 자이므로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제1항 가목에 의해 차량등록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직무관련자에 해당함.

Q&A 5 자동차매매사업조합

Q 자동차매매사업조합이 해당 지자체 차량등록사업소 공무원의 직무관련자인지?

A 자동차매매업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단체인 자동차매매사업조합은 비록 차량등록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직접 민원 등을 신청하지는 않지만 조합원이 공무원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단체이므로 행동강령의 취지를 감안할 때 차량등록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직무관련자에 해당한다 할 수 있음.

Q&A 6 업무와 무관한 건축업자

Q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건축관련 민원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업무와 상관없이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건축업자와 저녁 식사를 같이 하고 선물 등을 받았을 때 위 건축업자는 공무원의 직무관련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A 건축공무원의 직무관련자는 소관업무와 관련이 있는 건축업자로서 업무와 전혀 무관한 건축업자는 직무관련자라 할 수 없음. 그러나 위 건축업자가 해당 건축 공무원에게 건축허가를 신청 중에 있거나 신청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또는 건축허가 등의 취소로 직접 이익이나 불이익을 받는 위치에 있는 경우에는 건축 공무원의 직무관련자에 해당함.

Q&A 7 수사 사건의 피해자

Q 경찰공무원의 경우 수사 중인 사건의 피의자는 당연히 공무원의 직무관련자에 해당한다고 여겨지는데 이때 피해자도 해당 공무원의 직무관련자로 보아야 하는지?

A 경찰의 직무관련자는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 규정에 의해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사·감사·감독·검사·단속·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등'임. 그러므로 경찰관이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의 피의자 뿐 아니라 피해자 역시 수사의 대상이라 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도 해당 경찰관의 직무관련자에 해당함.

Q&A 8 관급물품 납품 업체

Q 공무원 A는 기관의 관급물품 구매요구, 검사, 검수, 출납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업체 B는 소속기관에 관급물품을 납품하고 있을 때 업체 B가 A의 직무상 상급자인 C의 직무관련자에 해당하는지?

A 공무원 A의 직무상 상급자 C의 경우 A의 소관업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이므로 납품업체 B는 A 뿐 아니라 C의 직무관련자에 해당함.

Q&A 9 교수의 직무관련자

Q 국립 대학교 교수인 A로부터 수업 지도를 받는 학생, 과대표 등은 교수의 직무관련자인지?

A 당해 교수로부터 수업지도를 받는 학생, 과대표 및 학부모 등은 교수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상대방이라 할 수 있으므로 교수의 직무관련자에 해당함.

Q&A 10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Q 공직유관단체 감사팀장 乙이 공직유관단체의 예산감사 등을 담당하는 상급기관 공무원 甲의 직무관련자인지?

A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乙은 공무원 甲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감사·감독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라 할 수 있으므로 甲의 직무관련자에 해당함.

2 직무관련공무원 · 임직원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다른 공무원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 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 나.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속 기관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
- 다.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공무원 및 사무를 위임·위탁 받는 공무원
- 라.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정하는 공무원

Q&A 11 직무관련공무원의 정의

Q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는지?

A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다른 공무원으로 그 구체적 범위는 기관별 공무원행동강령에서 정하고 있음. 예를 들어 팀장의 직무관련공무원은 팀장의 업무상 명령을 받거나 영향력 하에 있는 팀원을 의미함.

제 1 장 행동강령 개관

제 2 장 행동강령 위반사례

제 3 장 행동강령 Q & A

Q&A 12 공무원노조 지부장과 노조원

Q 공무원노조 노조원은 노조지부장의 직무관련공무원에 해당되는지 여부?

A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다른 공무원으로 일반적으로 노조지부장과 노조원의 관계는 공무원행동강령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무관련공무원 관계로 보기 어려움. 다만 직무관련공무원의 구체적인 범위는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정하도록 하고 있어 기관의 특수한 사정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기관별 행동강령에 노조원을 노조지부장의 직무관련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직무관련공무원에 해당될 수 있음.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다른 임직원

“직무관련임직원”이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다른 임직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 가. 임직원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 나.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의 소속기관 임직원
- 다.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의 위임·위탁을 받는 임직원
- 라. 그 밖에 공직유관단체의 장이 정하는 임직원

Q&A 13 직무관련임직원의 정의

Q 직무관련임직원이란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는지?

A 직무관련임직원이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다른 임직원을 말하며, 그 구체적 범위는 기관별 행동강령에서 정하고 있음.

Q&A 14 감사부서 직원의 직무관련임직원

Q 감사부서 직원 甲이 퇴근길에 소속기관 타부서에 근무하는 직원 乙을 우연히 만나 저녁식사를 하면서 乙이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 乙이 甲의 직무관련임직원에게 해당되어 행동강령 위반인지?

A 인사, 감사, 평가 등 업무 담당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소속기관의 다른 임직원은 직무관련임직원이라 할 수 있으므로 A가 B로부터 식사접대를 받는 것은 행동강령 위반임. 다만 예외적으로 직무수행 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통상적 관례의 범위 안에서 가능함.

3 선물

“선물”이란 대가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Q&A 15 선물의 정의

Q 행동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물은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지?

A 선물이란 무상 또는 시장가격(거래의 관행)보다 현저히 낮게 제공되는 화환·케이크·화장품·도자기 등 물품, 유가증권·숙박권·회원권·입장권·영업권·특허권·상표권·아파트 분양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말함.

Q&A 16 유가증권이란

Q 백화점 상품권도 유가증권에 포함되는지?

A 유가증권이란 사법상의 재산권을 나타내는 증권으로서 증권상에 기재한 권리의 이용에 관하여 소지 또는 교부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어음, 수표, 주식(보통주·우선주), 채권(국공채·회사채·전환사채 등), 승차권, 상품권(백화점·도서·온라인·제화 등), 공중전화카드, 스키장리프트 탑승권 등이 있음.

Q&A 17 승진, 전보 시 제공되는 화환

Q 교직원이 소속 학교 교장의 부임을 축하하기 위해 개인비용으로 동양난을 구입하여 선물하려고 하는데 이때 동양난을 경조금품으로 보아야하는지 아니면 선물로 보아야 하는지?

A 승진, 전보 등의 사유로 주고받는 화환 등의 물품은 경조사 관련 금품이 아닌 선물에 해당함. 그러므로 학교장은 직무관련공무원인 교직원으로부터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3만 원 이내)에서 제공되는 소액의 선물만 수수할 수 있음. 또한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소속기관의 장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금품 등은 가능함.



4 향응

“향응”이란 음식물·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Q&A 18 향응의 정의와 종류

Q 향응이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지?

A 향응(響應)이란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음식물, 음주(룸살롱, 단란주점, 나이 트클럽 등), 스포츠(접대 골프, 접대 스키 등), 오락(카지노, 경마장 등), 휴식시설(고급 이발소 등), 교통·숙박 등의 접대·편의를 제공받는 것을 의미함.

Q&A 19 콘도 예약의 편의제공

Q 성수기 콘도 예약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가족 여행을 위하여 산하단체 직원을 통해 전망 좋은 콘도를 예약한 경우 이것도 향응 수수로 행동강령 위반인지?

A 향응이란 접대 뿐만 아니라 편의제공도 포함하는 개념임. 콘도 예약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직무관련자에게 전망 좋은 콘도 예약을 부탁하여 이용하였다면 이는 편의제공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어 비록 콘도 요금을 자비로 부담하였다 하더라도 행동강령 위반임.

5 공직자 행동강령의 적용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영은 국가공무원(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 소속의 국가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지방공무원에게 적용한다.

Q&A 20 행동강령 적용대상

Q 대통령령인 「공무원행동강령」이 공직유관단체에도 적용되는지?

A 「부패방지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은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에게 적용됨. 행정부 이외의 헌법기관(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 각 기관의 규칙으로 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이 적용되며 마찬가지로 공직유관단체의 경우에도 공직유관단체 내부 규정(사규)으로 제정된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이 적용됨. 최근 선출직인 지방의회의원의 신분적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을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제정함.

Q&A 21 비상근 직원의 행동강령 적용

Q 현행 「공직유관단체 임직원행동강령」은 모든 임직원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사회 개최 시 일부 수당만을 받고 있는 비상임이사도 행동강령 적용대상인지?

A 공직자 행동강령의 적용대상은 원칙적으로 모든 상근 임직원임. 그러므로 상근직이 아닌 비상임 이사는 원칙적으로 행동강령 적용대상이 아님. 다만 비상임 이사가 정책 결정 등 중요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면 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행동강령 적용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음.

6 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Q&A 22 행동강령 제14조제1항 제4호의 의미와 범위

Q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제1항 제4호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의 범위는?

A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의 제공대상이 특정인·특정군으로 한정되지 아니하고, 특정인·특정군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특별히 제작된 것이 아니어야 함.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의 제한 가격은 없으나 사회일반의 상식이나 상규에 비추어 보아 기념품이나 홍보용 물품으로 볼 수 있는 가격대이어야 함.

Q&A 23 행동강령 제14조제1항 제6호의 의미와 범위

Q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제1항 제6호의 그 밖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제공되는 금품 등의 의미와 범위는?

A 해당기관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소속기관장이 수령을 허용하는 금품 등을 말하는 것으로써 국·공립학교 교원이 스승의 날, 졸업식 등의 행사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받는 꽃·케이크 등 간소한 선물, 외교관례상 선물을 거절하는 것이 결례가 되는 경우 원활한 외교업무 수행을 위하여 소속기관장이 정한 최소한의 금품 등을 말하는 것임.

Q&A 24 수학여행 담당교사가 무료항공권을 제공받는 행위

Q 수학여행을 담당하는 학생 50명당 1장씩 무료로 인솔용으로 제공되는 무료항공권 등을 여행사로부터 제공받아도 되는지?

A 학생들의 수학여행에 동행하는 교사가 항공사 등으로부터 무료항공권을 제공받는 것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는 것을 제한하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에 위반됨. 교사의 출장비는 공식적인 학교예산으로 지출되어야 함.

Q&A 25 업무협조에 대한 감사표시로 상금 수수 가능여부

Q 해외업무를 담당하는 A공기업이 해외에서의 신속한 업무협조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B공기업으로부터 감사패와 함께 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A 직무관련단체로부터 직무수행에 협조해 준 대가로 금품을 받는 것은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 제15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에 따라 수수가 불가하며, 다만 직무관련단체로부터 간소한 감사패는 받을 수 있음.

Q&A 26 기관의 법인카드사 등에서 제공한 해외연수 참가

Q 기관의 국고은행, 법인카드사가 우수기업회원 명목으로 비용을 제공하는 해외시찰에 참가할 수 있는 지 여부

A 기관의 국고 또는 법인카드를 담당하는 부서의 직원은 국고은행 또는 법인카드사와 직무관련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이 제공하는 해외여행에 참여할 수 없음. 다만, 상기 직무관련직원을 제외한 다른 직원은 기관의 정당하고 투명한 선발절차를 거쳐서 참가할 수 있음.

Q&A 27 공무원이 전별금을 받는 행위

Q 공무원이 퇴직·전출 시 전별금을 거두어 줄 수 있는지?

A 공무원이 퇴직·전출 시 전별금을 주기 위하여 직무관련공무원 또는 관내 직무관련업체 등으로부터 금전을 각출 또는 모금하는 행위는 할 수 없음. 단, 직원상조회 회칙 등의 규정에 따라 공식적으로 제공되는 전별금이나 동료직원이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 안에서 제공하는 소액(3만원 한도 내에서 각급 기관에서 정한 기준)의 선물은 허용됨.

Q&A 28 계약서에 명시하여 무료로 교통·숙박을 제공받는 행위

Q 학생들을 대상으로 모 사단법인이 주관하는 해외문화체험행사와 관련하여, 계약업체에서 관례적으로 일정 수 학생 당 교사 1명에게 무료로 교통 및 숙박 제공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조건을 계약에 명시할 경우 위반인지?

A 계약 대상 업체로부터 무료로 교통 및 숙박을 제공받는 행위는 계약서 상 해당 내용 명시 여부와 상관 없이 위반이며, 위와 같은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 수수한다고 해도 동일함.

Q&A 29 상급자에게만 상조회비로 선물 제공

Q 교장·교감이 교직원 상조회에서 상조회비(친목회비)로 구입한 백화점 상품권을 각 20만 원 씩 2회(설, 추석)에 걸쳐 받은 경우 위반인지?

A 상조회에서 사전에 정해진 회칙의 명확한 기준에 따라 회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가능함. 단, 교장·교감 등의 상급자에게만 명절에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위반임.

Q&A 30 직무관련자와의 골프

Q 평소 전화로만 대하던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감독부처 공무원들과의 친선도모를 위해 주말골프를 예약해 놓았다고 하는데 골프 접대는 금전이나 선물이 아니니 제한 없이 응해도 되는지?

A 행동강령 제14조가 금지하는 금품 등에는 금전, 선물은 물론 골프접대, 교통·숙박 편의 제공 등의 향응이 모두 포함되므로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행위에 해당되며, 부득이한 경우 각자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직무관련자와의 골프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할 대상임.

Q&A 31 졸업생으로부터의 선물 수수

Q 스승의 날 찾아온 졸업생으로부터 35만 원 상당의 화장품 선물세트를 받았는데 돌려줘야 하는지?

A 교사의 직무관련자는 재학생, 학부모, 계약 관련 업체 등으로 졸업생은 더 이상 직무관련자에 해당되지 않음. 그러므로 재학 당시 업무와 관련하여 수수하는 금품 등이 아니라면 스승의 날에 단순히 감사의 뜻으로 제공되는 선물은 받을 수 있음.

Q&A 32 제14조제2항제6호의 해석

Q 제14조제2항제6호의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의 구체적 예는 무엇인지와 기관장이 금품제공의 범위를 1인당 100만 원으로 정해도 무방한지 여부?

A 금액 상한선을 정하는 자는 금품 등을 주는 공무원의 소속 기관장이 아니라 금품 등을 ‘받는’ 공무원의 소속 기관장이므로, 금품 등을 ‘받는’ 공무원의 소속기관 행동강령을 살펴서 판단 가능하고, ‘주는’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행동강령에 정했다고 하여 가능한 것은 아님.

7 외부강의 · 회의 등 신고

Q&A 33 외부강의 · 회의 등의 신고대상

Q 외부강의 · 회의 등의 구체적인 신고대상 및 면제대상은?

A 대가를 받고 세미나 · 공청회 · 토론회 · 발표회 · 심포지엄 · 교육과정 · 회의 등에서 하는 강의 · 강연 · 발표 · 토론 · 심사 · 평가 등의 행위를 신고의 대상으로 하며, 민간기업 · 민간협회 · 사립학교 · 사설학원 등에서 하는 활동도 포함되고, 신고대상은 강의 대가를 받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판단함.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소속기관 포함)에서 요청한 강의 등으로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가 면제되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이 아닌 산하단체(공직유관단체, 기타 공공기관 등)에서 요청한 강의는 신고를 해야 함.

Q&A 34 기관장의 외부강의 · 회의 등 신고 방법

Q 소속기관의 장의 외부강의 · 회의 등은 누구에게 신고해야 하는가?

A 중앙행정기관장,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 · 교육자치단체장 · 공직유관단체장 등 기관의 장이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 · 회의 등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서를 제출하면 됨.

Q&A 35 외부강의시 소속기관의 여비 지급

Q 외부강의 · 회의 등의 요청기관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공직자의 소속기관이 여비지급을 할 수 있는지?

A 통상적으로 강의대가에는 강의료 외에 여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해당공직자의 소속기관에서 별도로 여비를 지급하는 것은 여비 중복지급에 해당되어 공무원행동강령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에 위반됨.

Q&A 36 근무시간 외 외부강의 · 회의 등의 신고

Q 근무시간외에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 · 회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신고대상이 되는지?

A 근무시간외라 할지라도 대가를 받고 출강한 외부강의 · 회의 등은 신고대상임.

제 1 장 행동강령 개관

제 2 장 행동강령 위반사례

제 3 장 행동강령 Q & A

8 경조사 · 경조금품 관련 제한

Q&A 37 교육청 업무시스템을 통한 사립학교 교직원에게 통지

Q 사립학교 교직원들과 함께 쓰는 교육청 업무시스템을 통하여 교육청 직원이 사립학교 교직원들에게 경조사를 통지하는 것이 가능한지?

A 원칙적으로 사립학교 교직원은 행동강령을 적용받는 교육청의 소속직원이 아니므로, 교육청 직원이 업무시스템을 통하여 직무관련자인 사립학교 교직원에게 경조사 통지는 위반임.

Q&A 38 지방의회의원의 집행기관 내부통신망을 이용한 통지

Q 지방의회의원의 경조사를 해당 지자체 집행기관의 내부통신망을 이용하여 직원들에게 통지하는 것이 가능한지?

A 지자체 집행기관에 근무하였거나 근무하지 않는 지방의회의원이 직무관련자인 집행기관의 직원들에게 자신의 경조사를 통지하는 것은 행동강령에 위반됨.

Q&A 39 전 소속 직원이 현 직무관련자인 경우

Q 과거 모 기관 소속 직원이었고 현재 변호사 · 변리사로 활동하는 자들에게 현재 기관의 공무원이 경조사 통지 가능한지?

A 과거 동료 직원이었다 하더라도 현 기관 소속 공무원의 직무관련자에 해당하는 변호사 · 변리사들에게 경조사를 통지하는 것은 행동강령 위반임.

9 위반행위의 신고와 확인

제19조(위반행위의 신고와 확인) ① 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영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 그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소속 기관의 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Q&A 40 신고자 및 신고내용의 비밀보장

Q 소속직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하려고 하는데 실명으로 신고하면 대상자들이 처벌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 신고를 망설이게 됨. 신고자 및 신고내용의 비밀이 보장되는지?

A 소속기관의 장, 행동강령책임관 및 사건담당 조사관 등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함. 만일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게 되면 행동강령 위반으로 징계의 대상이 됨. 또한 「부패방지법」에도 신고자의 비밀보장, 신분보장 등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위반 시 징계 또는 형사처벌 등을 받을 수 있음.

Q&A 41 행동강령책임관의 상담내용 비밀준수 의무 위반

Q 신규 공무원 甲은 경리계장 乙이 업체로부터 항응 등의 접대를 받는 사실을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상담, 이에 행동강령책임관은 乙을 주의시키는 과정에서 甲의 신분을 언급함으로써 甲이 상담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어떻게 되는지?

A 행동강령책임관은 「공무원 행동강령」 제23조3항에 의해 상담자와 상담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상담자가 상담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담자의 신분을 언급함으로써 상담에 따른 불이익을 받게 하였다면 이는 행동강령 위반으로 징계의 대상이 됨.



10 금지된 금품등의 처리

제21조(금지된 금품등의 처리) ① 제14조 또는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금품등을 제공받은 공무원은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이나 수수가 금지된 금품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공무원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비용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즉시 소속기관의 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한 후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품등을 처리하여야 한다.

Q&A 42 명절 선물의 처리

Q 산하기관 업무담당자 甲이 10만 원 상당의 명절선물을 감독기관 담당자 乙의 자택으로 보낸 경우, 乙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A 직무관련자인 甲으로부터 받은 10만 원 상당의 명절선물은 행동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된 금품등에 해당함. 그러므로 乙은 명절선물을 즉시 제공자 甲에게 반환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이때 택배로 반송한 경우 관련 영수증을 첨부하여 그 반환비용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음.

Q&A 43 한도액 초과 경조금품의 처리

Q 모친상을 당한 건설국장이 모친상 후 사무실에 출근하여 경조내역을 확인한 결과 직무관련업체인 관내 공사수주 업체들로부터 10만 원~50만 원 상당의 경조금이 접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A 경조사 관련 금품 등이 수수 가능한 범위(5만 원)를 넘은 경우 한도액을 초과한 경조금은 금지된 금품에 해당하므로 경조사 종료 후 소속기관에 복귀한 즉시 제공자에게 반환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 반환토록 하여야 함.

Q&A 44 제공자를 알 수 없는 금지된 금품의 처리

Q Q. 제공자를 알 수 없는 금품을 수수한 직원이 이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한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A 행동강령책임관은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51호, 2012. 8. 14) 제16조(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하여야 함.

- 제공자 확인 된 경우 : 제공자에게 반환.
- 멸실 · 부패 · 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 부패 · 변질 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없는 물품 ⇒ 폐기처분
 - 부패 · 변질 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물품 ⇒ 사회복지 시설 또는 공익단체 등 기증
 - 이외의 경우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세입조치를 하거나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익단체 등에 기증

Q&A 45 금지된 금품처리 시 공고기간

Q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51호, 2012. 8. 14) 제16조(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제4항3호 규정을 보면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경우로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세입조치하거나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익단체 등에 기증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때 공고기간은 얼마나 거쳐야 하는지?

A 공고기간 등 절차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없음. 공고 등의 절차를 거치는 이유는 물품 등의 제공자가 알 수 있을 정도의 기간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2주 ~ 1개월 정도 공고하면 될 것이나 이는 해당 물품 및 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자체적으로 정하면 됨.



11 위반시 처벌

부패방지법 제8조(공직자 행동강령) ③ 공직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한 때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공무원행동강령 제20조(징계 등) 제19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Q&A 46 파견직원의 행동강령 위반

Q A구청에서 B구청으로 파견 나온 직원 甲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함으로써 행동강령을 위반한 경우, 어느 기관의 행동강령이 적용되며 처벌은 어느 기관에서 하는지?

A 甲의 경우 파견근무중인 B구청 행동강령을 적용받으나 위반 시 징계 등 절차는 원소속기관인 A구청의 관련 규정을 적용받음.

Q&A 47 행동강령 미숙지로 인한 위반

Q 공무원A가 소속기관의 산하단체에서 대가를 받고 강의를 하였으나 행동강령에 규정된 신고대상 외부강의가 아니라 생각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징계의 대상이 되는지?

A 행동강령 위반의 경우 고의·과실을 불문하고 징계의 대상이 됨. 다만 행동강령 미숙지로 고의성이 없는 위반의 경우 징계시 경감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징계는 각급 기관의 관련 법령에 의해 자율적으로 처리되는 사항임.

Q&A 48 징계양정기준에 의한 처벌

Q 환경직 공무원이 설 명절을 앞두고 인사차 사무실에 방문한 환경관리업체 담당자가 몰래 두고 간 50만 원 상당의 백화점상품권을 발견하고 이를 돌려주지 않은 경우, 해당 공무원은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는지?

A 일반적으로 징계 처분은 소속 기관의 징계 규정에 따라야 함. 다만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행위자의 경우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51호, 2012. 8. 14)에 규정된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즉 의례적 명절선물로 수동적으로 50만 원 상품권을 받은 경우 ‘견책’ 정도의 징계를 받게 됨.

금품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제23조 관련)

금품 수수 행위 비위유형	금액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1,000만원 이상
		의례적인 금품·향응수수의 경우	수동: 견책 능동: 견책·감봉	감봉·정직 정직	강등 강등·해임	해임 해임·파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수수를 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동	감봉	정직·강등	해임	파면	
	능동	정직	강등·해임	해임·파면	파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수수를 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수동	정직·강등	해임	파면		
	능동	강등·해임	해임·파면	파면		

※ 조사·수사·단속 등 각 기관의 업무 특성에 따라 위 표의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12 기타

Q&A 49 업무 직접관련자에 대한 경조금품 예산집행

Q 공공기관의 기관장 명의로 업무관련자의 경조사에 기관의 예산으로 집행하는 경조금품 등의 범위는?

A 공무원행동강령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등에 따라 해당기관이 정하는 예산집행기준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Q&A 50 광역시 공무원이 관내구청 공무원에게 사업선정 부탁

Q 광역시 공무원이 관내 구청이 주관하는 현금보조사업에 자신 명의로 신청하고 구청 담당자에게 잘 처리해 주도록 부탁하여 사업선정 등에 이익을 제공받는 것이 행동강령 위반인지?

A 광역시 공무원이 관내 하급기관인 구청 담당자에게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은 것이라면 공무원행동강령 제10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에 위반되며, 사업자 선정 등에 있어 광역시 공무원이 자신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구청담당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을 하였다면 공무원행동강령 제11조(알선·청탁 등의 금지)를 위반한 것임. 아울러 알선·청탁 등의 금지 조항은 알선·청탁한 사항이 실제로 실현되지 않아도 행동강령에 위반됨.

공직자 행동강령 사례집 2013

발행처 :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

주 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미근동)
임광B/D 본관

전 화 : 02) 360-6650 FAX : 02) 360-3554

디자인제작 : 사회복지법인 해든디자인플러스
(Tel. 02-868-6854)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국민권익보호,
신뢰받는 정부를 만들겠습니다!